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金 璟 培

初等學校 學校運營委員會 運營에 대한
敎員・學父母의 認識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eachers and
Schoolchildren's Parents on the Oper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teering Committee

2001 年 8 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敎 育 行 政 學 科

敎 育 行 政 專 攻

金 連 圭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金 璟 培

初等學校 學校運營委員會 運營에 대한
敎員・學父母의 認識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eachers and
Schoolchildren's Parents on the Oper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teering Committee

위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 年 8 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敎 育 行 政 學 科

敎 育 行 政 專 攻

金 連 圭

金連圭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1 年 8 月 日

심사위원장 印

심사위원 印

심사위원 印

目 次

I. 緒 論	1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目的	2
3. 研究의 內容	2
4. 研究의 制限點	3
II. 理論的 背景	4
1. 學校經營의 技法	4
2. 學校經營과 意思決定	8
3. 地方教育自治와 學校運營	12
4. 우리 나라의 學校運營委員會	19
5. 다른 나라의 學校運營委員會 運營 事例	23
6. 先行研究의 考察	28
III. 研究의 方法	32
1. 調査 對象	32
2. 說問紙의 構成과 內容	33
3. 資料의 處理	33
IV. 結果分析 및 解釋	34
1. 學校運營委員會의 審議 事項에 對한 認識	34
2. 學校運營委員會의 運營委員의 役割에 對한 認識	56
3. 學校運營委員會의 活性化 方案에 對한 認識	76

V. 要約 및 結論92

1. 要約92

2. 結論94

3. 提言95

VI. 參 考 文 獻96

1. 國內 文獻96

2. 外國 文獻98

附 錄99

ABSTRACT109

表 目 次

<표 1>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 구조	21
<표 2> 응답자의 변인별 분포	32
<표 3> 설문지의 영역별 구성 내용	33
<표 4>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교원의 인식	34
<표 4-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35
<표 5> 교육과정 운영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36
<표 5-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37
<표 6> 도서 선정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38
<표 6-1> 도서 선정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39
<표 7> 정규 학습 이외의 교육활동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40
<표 7-1> 정규학습 이외의 교육활동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41
<표 8> 학칙 등 제 규정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42
<표 8-1> 학칙 등 제 규정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43
<표 9>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44
<표 9-1>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45
<표 10> 학교운영비 예·결산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46
<표 10-1> 학교운영비 예·결산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47
<표 11> 학교 발전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48
<표 11-1> 학교 발전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49
<표 12> 학교장과 교사의 초빙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50

<표 12-1> 학교장과 교사의 초빙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51
<표 1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사항의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52
<표 13-1>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사항의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53
<표 14> 학교내 다른 조직 운영 사항의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54
<14-1> 학교내 다른 조직 운영 사항의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55
<표 15> 교사위원의 역할에 대한 교원의 인식	56
<표 15-1> 학부모위원의 역할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57
<표 16> 학부모·지역위원의 교육과정 운영 지식·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	58
<표 16-1> 학부모·지역위원의 교육과정 운영 지식·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59
<표 17> 학부모·지역위원의 도서 선정 지식·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	60
<표 17-1> 학부모·지역위원의 도서 선정 지식·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61
<표 18> 방과후 교육활동 지식·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	62
<표 18-1> 방과후 교육활동 지식·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63
<표 19> 학부모·지역위원의 제 규정 지식에 대한 교원의 인식	64
<표 19-1> 학부모·지역위원의 제 규정 지식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65
<표 20> 교외 교육활동의 지식·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	66
<표 20-1> 교외 교육활동의 지식·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67
<표 21> 학교운영비 예·결산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	68
<표 21-1> 학교운영비 예·결산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69
<표 22>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	70
<표 22-1>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71
<표 23> 학교장과 교원의 초빙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	72

<표 23-1> 학교장과 교원의 초빙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73
<표 24>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	74
<표 24-1>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75
<표 25> 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교원의 인식	76
<표 25-1> 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77
<표 26> 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교원의 인식	78
<표 26-1> 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79
<표 27> 학교장의 조정능력 필요성에 대한 교원의 인식	80
<표 27-1> 학교장의 조정능력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81
<표 28> 학부모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교원의 인식	82
<표 28-1> 학부모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83
<표 29> 학부모·지역위원의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교원의 인식	84
<표 29-1> 학부모·지역위원의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85
<표 30> 다른 조직의 운영에 관한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86
<표 30-1> 다른 조직의 운영에 관한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87
<표 31> 심의 사항 사전 예고제에 대한 교원의 인식	88
<표 31-1> 심의 사항 사전 예고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89
<표 32> 회의 방청에 대한 교원의 인식	90
<표 32-1> 회의 방청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91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정보화·세계화 시대로 접어든 21세기를 즈음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교육을 돌아보고 심각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교육개혁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이미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재까지 새 시대에 도전할 주역들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해 제시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규제 중심의 학교 경영을 지양하고 학교를 교원·학부모·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서 구성되고 조직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지난 6년간의 운영 결과를 평가해보면 교육수요자와 교육공급자가 상호 합심하여 학교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학교장의 학교 운영권과 재량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은 편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발견되어 진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자치기구로서 교육개혁 과제들을 구성원이 스스로 책임지고 개혁해 나가도록 마련된 제도이지만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장과 학부모 및 교원들의 인식의 차이가 크고, 학부모와 교원들의 관심도가 낮아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의 수혜자이면서 납세자인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서 정책 결정이나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정도가 미흡하며, 또한 교사들도 학교 경영에 참여하는 정도가 교무회의, 학년 협의회, 기획위원회 등에서 형식적인 참여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도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집단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 의도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研究의 目的

본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초등학교 교원 및 학부모들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3. 研究의 內容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 및 선행연구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배경 변인(지역, 성별, 학력, 교육경력, 학교규모)에 따라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배경 변인(지역, 성별, 학력, 교육경력, 학교규모)에 따라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밝힌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배경 변인(지역, 성별, 학력, 교육경력, 학교규모)에 따라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4. 研究의 制限點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소재 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표준화된 자료가 아닌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타당도와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

Ⅱ. 理論的 背景

1. 學校經營의 技法

교육활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이것은 학교교육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활동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¹⁾ 이러한 이유에서 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사회는 다른 어느 사회조직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²⁾ 그러나 우리 나라 학교조직의 분위기는 과도한 승진 지향성, 현상유지에 만족하려는 무사안일주의, 변화와 혁신의 추구보다는 전통을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학교경영체제는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체제와 관리행정체제 그리고 경직화된 관료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³⁾

21세기는 정보화·세계화의 시대로 고등정신 기능을 갖춘 창조적인 사고력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교육은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내용을 학교현장에 제공하여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개성있고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⁴⁾ 이러한 학교교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국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나름대로 그들의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⁵⁾, 노종희도 우리 나라의 학교도 이제는 관료적 조직으로부터 탈피하여 공동체 쪽으로 그 무게가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1) 조성일·안세근, 지방자치 제도론,(서울 : 배영사, 1996), p.15.

2) 박용현, 학교사회,(서울 : 배영사, 1998), pp.79-81.

3) 김태완외, “교육자치제 종합연구”,(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0), p.147.

4) 조성일·안세근, 전거서, pp. 16-17.

5) 서정화·박설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중심 책임경영제 활성화 방안”,(홍익대 논문 제 13집, 1996), P.71.

6) 노종희, “교육개혁을 위한 학교 공동체 구축과 지방화 시대의 교육개혁 과제와 전략”, (인천:한국교육행정학회, 1996), p.71.

이와 같이 다원화된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교육활동과 행정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교육 소비자 중심, 학습자 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이란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집단이나 조직 구성원들의 협동적 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용이다. 그러므로 경영은 반드시 집단이나 조직을 전제로 하며,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가능하다면 최소의 노력과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다양한 욕구를 가진 구성원들이 협동하도록 지도·격려하며, 영향력을 주는 집단과정이다.⁷⁾ 그러므로 경영이란 조직적 협동행위 또는 공동목표를 달성함에 필요한 협동적 단체활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학교행정이 하나의 학교를 단위로 이루어질 경우 학교경영 또는 학교관리라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경영과 관리의 관계는 경영우위론, 관리우위론, 경영관리 동위론의 세 가지로 분리되나, 경영과 관리를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⁸⁾

학교경영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종철은 학교경영이란 단위학교, 특히 초·중등학교에 있어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결정, 집행과 지도, 통제와 평가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봉사활동을 지칭하며, 학교조직 내에서 집단적 협동행위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였고⁹⁾, 서정화는 학교경영을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자원들을 확보하여 이를 배분하고 조정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 또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¹⁰⁾ 남정걸은 학교경영이란 교장의 주관적·이상적 관점에서 교육을 전개·운영하는 것에 관한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배려이며, 경영자의 창의적 기능으로서 자주적, 자율적으로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내용 그

7) 남정걸, 교육행정과 학교행정, (서울:세영사, 1996), p.21.

8) 정태범외, 학교·학급경영론, 한국교육행정학회편, 한국교육행정학전문서 9, (서울:도서출판 하우, 1996), p.3.

9) 김종철외, 학급경영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1), p.3.

10) 서정화외, 학교경영, (서울:갑을출판사, 1998), P.15.

자체의 운영이며, 학교를 하나의 경영체로 보아 학교 운영의 최고 방침을 결정하는 기능이라고 정의하였다.¹¹⁾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학교경영이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창의적인 관점 하에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을 정비·확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지도·감독하는 일련의 봉사활동으로서 학교의 정책, 방침,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사의 활동 등에 대한 교직자체의 전문성에 관한 것을 다루는 활동 또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학교경영의 원리란 문화유산과 공중의 공통된 기대에서 이끌어 낸 제 가치의 체계로서 학교경영에 적용해야 할 당위의 기준을 의미한다.¹²⁾

학교경영의 원리로서 김창걸은 민주화의 원리, 합리화의 원리, 과학화의 원리, 조직화의 원리, 효율화의 원리, 지역화의 원리를 들었고¹³⁾, 서정화는 합목적성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민주적 운영의 원리, 능률성의 원리, 과학성의 원리, 합법성의 원리를 들었으며¹⁴⁾, 김봉수는 민주화의 원리, 과학성의 원리, 사회성의 원리를 들었다.¹⁵⁾ 특히 김영도는 학교경영의 원리를 법제면에서 본 기본원리, 운영면에서 본 기본원리, 그리고 학교경영의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원리로 대별하고 학교경영의 민주화를 위한 원리로서 민주화의 원리, 과학성의 원리, 사회성의 원리를 들었다.¹⁶⁾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경영의 원리를 제시해 본다.

첫째, 합목적성의 원리이다. 학교경영은 학교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봉사활동이며 수단인 것이다.¹⁷⁾ 따라서 학교경영 활동은 학습효과가 높아지고 전체 학교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합법성의 원리이다. 학교경영은 헌법 제 31조의 규정을 비롯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는 교육관계의 법률과 명령, 조례, 규칙 등에 의거하여 집행되어야 한다.¹⁸⁾ 이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국가 예

11) 남정걸, 전게서, p.9.

12) 정태범외, 전게서, p.6.

13) 김창걸, 교육행정학 신론,(서울:형설출판사, 1998), PP.345-347.

14) 서정화외, 전게서, pp.20-24.

15) 김봉수, 학교와 학급경영,(서울:형설출판사, 1987), P.192.

16) 김영도, 학교경영의 이론과 실제,(서울:문음사, 1991), pp.51-52.

17) 서정화외, 전게서, pp.20-24.

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부당한 직무수행과 행정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민주성의 원리이다. 이것은 학교교육의 목표설정과 경영계획 수립, 실천, 평가 등 학교경영의 제반 과정과 영역에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하여 공정한 의사를 반영하게 하며, 특히 실천과정에 있어서 권한의 위양을 통하여 독단과 전횡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¹⁹⁾ 학교경영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학교장에게 있지만, 교장의 민주적 경영태도는 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높은 참여 의식과 과업수행의 의지를 이끌어 내어 학교 교육목표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자율성의 원리이다. 이것을 단위 교육기관인 학교 조직체가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상부나 외부조직의 지시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조직체를 운영하는 것 즉 기관의 자율을 의미한다.²⁰⁾

학교가 변화에 신축성 있게 적응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며, 학교조직이 전문적 조직이며, 이완 결합체제²¹⁾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경영의 자율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능률성의 원리이다. 이것은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최소의 경비와 노력을 들여서 최대의 성과를 거두자는 것 즉 최소한의 인적·물적 자원과 시간·정보 등을 투입하여 교육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교육에 있어서는 유형의 성과보다는 무형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단기적 평가보다는 장기적 평가에 의한 능률과 단순한 경제적 능률보다는 사회적 능률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민주성의 원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능률성의 원리가 강조될 수는 없는 것이며 양자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²²⁾

18) 정태범외, 전게서, p.10.

19) 김영도, 전게서, pp.51-52.

20) 김종철, 한국고등교육연구,(서울:배영사, 1979), P.139.

21) E.Weick.Karl, "Educational Organizations as Loosely Coupled Syste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21(Maech 1976), p.3.

22) 정태범외, 전게서, p.12.

여섯째, 과학성의 원리이다. 이것은 학교경영이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체계적인 운영체제를 갖추어 실현되며, 과학적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²³⁾ 즉 학교 교육현장의 실태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전망을 기초로 학교경영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실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가 재투입되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

일곱째, 지역성의 원리이다. 이것은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추어서 학교를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의 생활화, 학교의 사회화 원리가 실현될 수 있다.²⁴⁾ 학교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에 활용하며, 학교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는 상호 협조하는 지역사회 학교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2. 學校經營과 意思決定

Conway는 '참여'와 '의사결정'이란 두 개의 개념을 통합하여 '참여적 의사결정'(participative decision making)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²⁵⁾

'참여적 의사결정'은 두 가지 개념군의 교차점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개념으로 의사결정이란 한 사람 이상의 행위자가 특정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참여'에 관련된 개념으로 '참여'는 어떤 행동이나 일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의 행위자의 참가가 '공유'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참여적 의사결정'을 그 속성에 따라 다시 '학교 내부에서의 참여적 의사결정'과 '학교 외부에서의 참여적 의사결정'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학교경영에 있어서 '참여적 의사결정'이란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사안에 따라 참여가 공유된 상태에서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이

23) 정태범·김세기·서정화, 학교경영 핸드북,(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1), P.267.

24) 정태범외, 전제서, p.12.

25) J.A.Conway, "The Myth, Mystery and Mastery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1984.

라고 할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의 의사결정은 학교경영의 전 과정 - 계획, 지도, 통제 등 -에서 수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학교와 그 구성원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²⁶⁾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 집중되어 있으면 구성원들의 불만은 커지게 되고 책임의 공유의식은 낮아지게 된다.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학교경영의 의사결정 체제 변화에 관한 이론적 기반은 크게 단위학교 중심 경영모형(SBM : school-based management)과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SDM : shared decision - making)으로 나눌 수 있다.²⁷⁾

단위학교 중심 경영모형(SBM)은 학교의 예산, 학교의 인사, 학교조직, 교육과정 등의 주요 결정 권한을 학교수준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참여적 의사결정모형(SDM)은 행정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관련 구성원들이 학교수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SDM 은 내용 모형이 아니라 절차 모형으로서 협동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학교 관련 구성원들로 하여금 학교운영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주인의식과 협동적 분위기를 다지는 한편,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학교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은 학교행정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나 학생, 지역사회 인사,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학교의사 결정에의 참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²⁸⁾그러나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교육행정이 민주화·자율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과정의 투명성의 보장과 함께 SDM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경영의 민주화가 학교 교육목표

26) 정태범외, 전게서, p.11.

27) 임연기, “학교운영 개혁의 과제”, 교육행정학회 소식 제48호,(인천:한국교육행정학회, 1996), PP. 432-434.

28) 강무섭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1995, pp. 12-20

의 설정 및 교육계획 수립, 이의 실천, 평가에 이르는 제반 과정이 교육의 권한과 책임을 지닌 당사자 모두의 참여에 의해 결정·집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뜻한다.²⁹⁾고 볼 때 SDM이야말로 학교경영을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① 교사의 참여

교사의 학교경영에의 참여 기회 확대가 이루어질 때의 궁극적 효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rockenberg와 Clark는 학급 내의 교수-학습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의사결정 사항에 교사들이 참여하게 될 때 교사들은 교수-학습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고³⁰⁾, Hoy와 Miskel은 학교경영에 있어서 교사의 참여가 가져오는 궁극적인 효과로서 교사의 사기진작과 학교조직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하였다.³¹⁾

그러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견해도 있다.

Conway는 교사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교사들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범위나 내용에 관해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지나친 교사 참여의 확대는 오히려 참여를 안 시키는 것보다 더 유해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가 내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³²⁾

첫째,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참여는 일부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참여가 변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지 않는다.

29) 정태범외, 전게서, p.587.

30) V. Crockenberg, & W. W. Jr Clark, "Teacher Participation in School Decision Making", Phi Delta Kappan, 61, (1979).를 인용한 강무섭·유현숙외, 전게서, 1995, p.13에서 재인용.

31) W.K. Hoey, & C. G. Miskel,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3rd ed), New York(1987). : Random House.를 인용한 강무섭외, 전게서, 1995, p.13.에서 재인용.

32) J.A.Conway, 'The Myth, Mister and Mastery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20(3),1984.; 김문하,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교원·학부모의 인식 차이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9.에서 재인용

둘째, 직무 만족은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사결정 사항의 유형 및 참여 정도와 함수관계를 맺는다. 지나친 참여는 조직에 관여하기 보다는 유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

셋째, 교사들이 참여를 통해 학교경영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는 일은 수업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중요하지만, 지나친 참여는 학급관리 에 지장을 초래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김영철³³⁾도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의사결정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이고,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될 것이지만, 모든 의사결정에 교사들이 참여하기보다는 결정해야 할 문제의 성격과 상황, 그리고 교사들의 관심 및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³⁴⁾

이상에서와 같이 참여는 교사 자신의 교수-학습활동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학교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대한 헌신적인 기여와 책무성에 대한 인식증대, 교직에 대한 만족도 등에 도움을 줌으로써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② 학부모·지역사회 인사의 참여

학부모의 참여란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청취자, 후원자, 협력자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부모 및 학교행정가, 교사들과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들의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³⁵⁾

우리 나라는 민법상 어린이의 보호 양육권과 헌법 및 교육법상 어린이의 교육권에 대한 대리권을 그 부모에게 인정하고 있다.³⁶⁾ 그러므로 학부모가 교사, 학교에 대하여 교육에 관한 요구를 할 권리는 인

33) 김영철, “학교에서의 의사결정”, 교육행정연구 제7권 제1호, 1989, p. 53.

34) J.A.Conway, 'The Myth, Mister, and Mastery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20(3), 1984. ; 김문하,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교원·학부모의 인식 차이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p.9.에서 재인용

35) 권세익,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p. 11.

36) 민법 제913조, 헌법 제31조, 교육법 제96조, 102조.

정된다³⁷⁾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교육행정의 민주화는 주민 참여를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경영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당위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³⁸⁾ 따라서 학부모 집단은 교육의 수혜자이며, 납세자인 동시에 지역주민으로서 학교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 정리해 볼 때 학교경영에 있어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의 범위, 정도, 내용 등에서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즉,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참여를 유도할 때 교육의 효과도 높이고, 구성원들의 사기도 제고시키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3. 地方教育自治와 學校運營

우리 헌법은 각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확립을 최고 이념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국가 발전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목표와 국가의 목표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의 동일성과 조화를 추구하는 곳에 교육의 방향이 자리잡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방법은 국가적 지도 지방적 자율, 전국적 통합과 지방적 다양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큰 관건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양자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국가의 일방적 지도와 통제 및 획일화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우리는 이제 지방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교육도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미래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이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력이야말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한 사회와 국가의 힘과 부, 개인의 삶의 수준은 기술, 정보, 지식, 문화 등 지적 자산의

37) 강인수외, 교육법론, 교육행정학전문도서 8,(서울:도서출판 하우, 1995), p.81.

38) 강무섭외, 전게서, p.16.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지적 자산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학습능력과 창조력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³⁹⁾ 따라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보다는 지역에 따라 다양화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방교육자치이다.

지방교육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학부모의 학교운영에의 참여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교육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인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교육구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교육자치단체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즉 자치권을 가지며, 주민이 부담한 주민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 교육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방자치가 일정 지역을 단위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단체에 의하여 그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통치권과 행정기능이 배분·위임되며,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듯이⁴⁰⁾ 교육자치 역시 같은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구성된 교육자치단체에 의하여 그 교육구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당해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제도적인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는 교육자치제의 본질이 무엇인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자치제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의의

39)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1995. 5, pp.4-5.

40) 손재식, 현대지방 행정론(서울:박영사,1983), pp. 27-28.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자치제의 의의는 교육활동의 특수성 내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면에서 민주성, 자주성, 전문성 등을 보장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⁴¹⁾

한편, 교육자치제가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정책에만 국한된 협의의 개념인가 아니면 중앙교육행정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가 하는 점이 논의될 수 있다.⁴²⁾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자치제는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라는 두 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교육자치의 개념에는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과 주민자치를 통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 등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제의 핵심은 지방교육자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⁴³⁾

교육은 원칙적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인 활동이다. 모든 지역과 학교에서 교육이 똑같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그 래서도 안된다. 항상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나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획일적인 통제는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도한 집권화가 교육행정의 능률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지는 모르나 교육의 획일주의와 경직성을 가져와 결국 교육활동의 자율성 신장과 자주성 보장 그리고 교육행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자주성, 전문성, 효율성, 책무성 등을 조장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⁴⁴⁾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단체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가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 자율성 보장은 교육활동 그 자체의 성립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제도와 운영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자치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제의 개념 내지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

41) 조성일·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서울: 양서원, 1996), p.27.

42)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자치제 발전방안(서울: 교육개혁심의회, 1986. 12), p.7.

43) 김신복,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교육행정연구회 제3권 제3호(서울: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 연구회, 1995. 12), p.29.

44) 조성일·안세근, 전계서, p.28.

자치제의 기본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는 학자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원리, 민주통제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⁴⁵⁾를 주민자치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를 들고 있다.⁴⁶⁾

또한 김영식·최희선은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분리·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등을 들고 있다.⁴⁷⁾

이상에서 논의 제시한 교육자치제의 제 원리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그 원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동법 총칙 제1장은 이 법의 목적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이 발휘되어 운영될 때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를 이 세 가지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⁴⁸⁾

첫째, 교육의 자주성의 원리이다. 지방교육자치가 그 원리로 갖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의미한다.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는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가 자주성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행정활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결정하는 획일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관치 행정과는 구별됨을 의미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가치 창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외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거부한다.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

45)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서울 : 서울과학사, 1991), pp. 84-86.

46) 김종철·이종재,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서울 : 교육과학사, 1994), pp. 209-210.

47) 김영식·최희선, 교육제도 발전론(서울 : 성원사, 1988), pp. 326-330.

48) 조성일, 교육행정과 교육경영(서울:재동문화사, 1995), pp.266-270.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 제5조에서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교육위원의 자격을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는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특수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야 한다.⁴⁹⁾

지방분권의 원리는 교육법 제14조와 지방자치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다. 교육법 제14조 제1항의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실천사항으로 동법 제1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⁵⁰⁾

지방분권의 원리는 중앙집권의 원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써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그 정책의 집행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간의 다양성을 최대한으로 허용해 주고 최소한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에 대해 지방주민의 자율과 자치정신을 신장해야 한다는 것이다.⁵¹⁾

그러나 이것은 단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기관으로의 권한 배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학부모에게 교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과 더불어 학교운영에까지 참여를 해보자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49) 윤정일외, 한국의 교육정책(서울 : 교육과학사, 1991), p. 436.

50) 조성일, 전거서, p.28.

51) 김종철·김신복·이종재,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교육 행·재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보고서, 1985. 12, p.21.

둘째, 교육의 전문성의 원리이다. 지방교육자치가 그 원리로 갖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 원리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전문화를 의미한다.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는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조직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주민을 대표하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결정 및 최종 의사결정을 하면 전문적 관리의 원리에 따라 교육 전문가인 교육감이 집행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행정 요원의 전문성은 필연적으로 지방교육행정의 전문화를 요구하게 된다. 왜냐하면 교육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조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확립하고 이를 지원·조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전문성은 필연적으로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기간 동안의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 더 높은 교육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교육행정요원들에 의해 교육행정 활동이 효율적·자율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만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⁵²⁾

교육행정 활동의 전문성 원리는 헌법과 교육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헌법 제31조 4항에서 “교육의 전문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법 제 74조는 “교사는 항상 사표가 될 성격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편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하여, 국민교육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방교육을 대표하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규정을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32조 제2항에서 “교육위원은 그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지방교육의 특수성 원리이다. 지방교육자치가 그 원리로 갖고 있는 지방교육의 특수성은 주민참여의 원리와 자주적 재정의 원리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⁵³⁾

52) 조성일, 전게서, p.32.

53) 조병효, 전게서, p.59.

지방교육의 특수성은 주민참여를 요구하게 되며, 국가적 통치권이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그들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주민참여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의 원리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국가에 있어서 대의정치와 이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교육자치단체는 주민이 직접선거를 한다든가 또는 공선된 기관에 의하여 선임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⁵⁴⁾ 왜냐하면 민주국가에서는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하고 민주시민의 양성은 민주교육에 의해서만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사회 문제는 교육문제이다. 따라서 단체장 후보들은 그들의 선거공약에 해결해야만 하는 지역의 교육문제를 당연히 의제화 시킬 것이고 당선 후 이러한 교육문제를 교육위원과 교육감 나아가서는 단위학교와 협조 내지는 합의에 따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관련된 주민참여의 원리는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범위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방법의 문제, 그리고 주민들이 지방교육행정 및 단위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문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둘째, 자주적 재정의 원리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실행에 있어서 그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면서 동시에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기도 하다.⁵⁵⁾

최근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으로 부동산 관련 교육세 인상과, 소득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주민세분 교육세의 세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⁵⁶⁾ 즉 특별소비세, 주세, 금융보험업자의

54) 김보현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서울 : 법문사, 1982), p. 266.

55) 김보현, 상계서, p.267.

56)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확충방안(교육개혁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4), pp. 35-36.

수입금액 등 국세분 교육세는 현행과 같이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세에 통합하면서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입 총액의 일정률을 지방교육특별회계에 전입하든가 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취득세, 등록세 수입의 일정률을 지방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교육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GNP에 대한 교육비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확보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우리 나라의 學校運營委員會

1)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배경과 의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를 일찍이 제도화한 미국, 영국과 독일 등 서구 나라들에 비해, 그 동안 우리 나라의 학교들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획일적·일방적인 교육만을 실시해 왔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미흡해 학교자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학교 현장의 민주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신설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다. 특히 문민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김영삼 정부는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주민자치에 따른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실현하기에 이른다.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을 통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고,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장 및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법이 1995년 7월26일 개정되면서 제44조의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이어 1996년 2월 22일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을 신설하고, 시·도 지역에 소재 하는 학교는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 지역에 속하는 학교는 1998년 4월 30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시하였다.⁵⁷⁾

그러나 종전의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조항은 1997년 11월 18일 열린 제185회 정기국회를 통해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게 되었고, 또한 1998년 3월 1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33조 1항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그간 재정 후원만 담당하던 육성회와는 달리 학교장,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가 서로 협력하여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교육자치의 중추기구이며, 학교재정, 인사, 교육과정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증대로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확립한다.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란 교육의 수혜자와 교육담당자들을 중심으로 단위 학교가 조직 관리, 인사, 재정,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며,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권한을 이양·위임한다. 셋째,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육공급자의 책무성을 제고한다. 넷째,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를 구축한다. 다섯째, 학교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여섯째, 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육소비자인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이는 그동안 학교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학교운영의 자율성 부족’과 ‘학부모의 학교참여 미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는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에 대한 획일적, 권위적 통제를 지양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한 배경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57) 교육개혁위원회, 전게서, p.25.

2) 교육자치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법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47호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1991년 12월 31일 개정(제1차)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률은 1995년 7월 26일 개정(제2차)된 법률 제4951호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작되어 1995년 12월 29일 제3차 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인 법률 제5069호에 의하여 조직·운영되었으며, 현재는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교육기본법'인 법률 제5437호 제5조(교육의 자주성) ②항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교육법전편찬회 1998:12)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 제4장 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운영 시·도 조례에의 위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664호 98.2.24) 제4장 제2절에 시행에 관한 내용 등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⁵⁸⁾

<표 1>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 구조

법률	법률 내용
초·중등교육법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심의, 발전기금 설치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칙, 위원의 선출방법,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시정명령우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사용범위 등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소규모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여부, 구성, 기능, 위원의 수, 구성 비율, 운영 방법 등
학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항

58) 교육법전편찬회, 교육법전(서울:동진인쇄, 2001), pp. 16-17.

3)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학교교육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된 국가의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적인 통제방식은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거쳐 1991년 법률 제4347호에 의한 지방교육 자치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환을 맞는다. 이제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교장 중심체제로 이루어져 온 학교운영 체제는 교육부의 결정 사항을 단시간 내에 전국의 학교에 전파·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률적인 면도 있으나, 학교간 차이와 개별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의 주요 결정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을 배제시켰다는 점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학교장,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가 서로 협력하여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교육자치의 중추기구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들은 이제까지 교육부,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했거나 주로 학교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던 사항들이다. 이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명령체계인 중앙집권적 통제구조가 교사 및 학부모, 지역인사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학교교육의 운영에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한 증거로 볼 수 있다.

4)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대 효과

학교단위의 교육자지체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시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강무섭⁵⁹⁾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시켜 교육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둘째, 학교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학교운영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 셋째, 학교재정 기반의 확충으로 사교육비를 공교육비에 흡수하고 과도한 과외

59) 강무섭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95),pp.54-57.

비 부담을 축소시킬 수 있다. 넷째, 선택 교과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학생의 적성, 소질 개발에 이바지하며 수업 및 평가 방법의 개선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기대하는 효과를 보면, 첫째,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이 학교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학부모, 교사, 지역 인사가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어 이들로부터 각종 지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 넷째,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창의성 및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끝으로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연계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가 지역사회의 공동의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5. 다른 나라의 學校運營委員會 運營 事例

세계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개혁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두 개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학교교육의 효과성운동과 학교단위 책임경영제(School Based Management)가 그것이다.

그 중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는 우리 나라 교육개혁 중 초·중등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그간 정부 차원의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새로 도입했으며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의 여러 나라에서 확산되고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각국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미국의 사례⁶⁰⁾

(1) 개요

미국은 자치제도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주마다 그리고 같은 주안에서도 교육구(School District)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모형은 없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대동소이하므로 워싱턴 주의 시애틀지역 3개도시(Seattle시, Shoreline시, Mukilteo시)교육구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출

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구에 따라 다르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이며, 정규교사 이외에 임시교사, 서무직원과 고용원도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 학교 후원 기업대표, 학생도 참여하고 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으로는 학부모위원, 교직원위원, 지역인사위원, 학생위원

③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학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 선정 및 임원의 임무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 및 간사 1인을 선정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에 한한다. 의장은 사전에 의제를 준비하여 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하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⑤ 특별위원회의 설치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안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최소 1인 이상의 운영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부모와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참여가 개방된다.

60) 송인호(주 시애틀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장),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현황(교육부 해외교육정보, 1996. 2. 1.), pp.13-15.

(3) 운영위원회의 기능

- ① 학교장 채용 ② 교사, 임시교사, 서무직원, 고용원의 채용
- ③ 학교 예산 ④ 학교목표설정과 학생생활지도

2) 영국의 사례⁶¹⁾

(1) 개요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1902년 및 1944년 교육법에 의해 설치·운영되었다. 1986년 교육법에 의해 위원들은 교육과정, 성교육, 학교시설물 관리 등과 관련된 특별한 의무를 갖게 되었고, 1988년 교육개혁법에 의해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다방면으로 강화·확대되었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 수행에 대한 의무를 교육청과 함께 위원회에도 부여하였다. 1994년 1월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인체가 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이나 결정은 위원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 즉 법인에 귀속되게 되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장·교사위원, 교육청임명위원, 선출위원들로 구성되고, 위원 수는 학교규모(학생 수)에 따라 9-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① 교육과정 심의 및 지원 ② 예산관리
- ③ 교직원 임명, 관리, 해고 ④ 정보 제공
- ⑤ 장학 감사

61) 강사민(주 영국 한국교육원장),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교육부 해외교육정보, 1996. 3. 1.), pp.16-19.

3) 독일의 사례⁶²⁾

(1) 개 요

독일의 경우 학교의 임무는 독일 연방정부의 헌법(기본법)과 주헌법에 근거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학교법은 학교운영과정에 있어서 상호 협력이 요구되는 「학교장」의 임무, 「교사협의회」의 임무, 「학교협의회」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은 전체 교사협의회회의 의장이며 학교를 관리·감독하고, 전체 교사협의회회의 후원을 받아 학교의 모든 업무관리와 책임을 진다.

「교사협의회」(Lehrerkonferenz)는 학교의 수업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조치를 협의하고 결정하며, 서로의 지식과 관심을 교환하며 교사들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전체 교사협의회회의 결정은 학교장과 교사가 따라야 한다.

「학교협의회」(Schulkonferenz)는 학교경영과정상의 주요 문제를 협의하고 동의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는데, 그 근본취지는 각 이해 집단의 고른 참여를 통해 학교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

(2) 「학교협의회」의 기능

학교협의회는 학교경영, 교사·학부모·학생들의 협력,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공동의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개개 그룹간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

학교협의회는 교사협의회와 학교장에게 기본적인 교육문제 특히 점수를 부여하는 문제, 진급 등에 관한 제안권을 가진다.

(4) 「학교협의회」의 운영

학교협의회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62)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연구, 1995, pp.19-20.

타인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학교협의회는 적어도 한 학기당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는 적어도 위원 1/3의 제안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4) 일본의 사례⁶³⁾

(1) 개요

일본에서 PTA(부모와 교사의 회)의 역사는 194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PTA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동의 부모와 교사가 협력하여 학습활동이나 그밖의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2) PTA의 현실 과제

일본의 PTA는 최근 다음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첫째, PTA는 회원 자격의 문제이다. PTA는 본래 자주적인 단체이므로 부모, 교직원의 회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PTA가 아동학생들의 행복을 추구해 가는 것이므로 전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일본은 부모,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 PTA의 바람직한 성과를 달성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임원 선출의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PTA의 중요성을 십분 이해하는 부모들이 임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임원이 될 방법이 거의 없다는 데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어머니들의 현저한 사회 진출과 직업이 있는 부인의 증가가 이런 어려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PTA가 그 본래의 목적을 좀더 좋게 달성할 수 있게끔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63) 공병호, 일본의 PTA활동과 지역의 교육력, 새교육 97년 2월호, pp.132.135.

5) 외국의 사례로 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시사점

이제까지 미국, 영국, 독일과 일본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교사·지역사회 인사가 상호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발전적인 제안과 결정을 하고 있다. 둘째, 특히 학부모와 지역 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학교자치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운영을 위한 물적·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다. 셋째, 학부모 조직,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비단 재정적인 지원의 기능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넷째,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조직은 서로의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학교 발전을 위한 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장,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행정기관의 지원이나 제도화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자치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6. 先行研究의 考察

본 연구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문하⁶⁴⁾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사·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교원·학부모의

64) 김문하,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교원·학부모의 인식 차이와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pp. 101-102.

인식 차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현행 법규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과 교원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 학부모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심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의 전문성에 관하여 교원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일반 학부모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당국과 학교운영위원회 간의 의견을 조정해 주고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와 운영위원들의 심의 사항에 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그리고 심의 안건의 사전 통보 및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 방청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일섭⁶⁵⁾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전망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인식조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준비단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과 기대 수준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시켜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교육현장에 바람직하게 접목시키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연구한 결과, 학부모들은 육성회나 어머니총회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전부라고 잘못 인식하여 참여율이 저조하며, 현재의 학교교육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를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학교교육이 규제에 묶여서

65) 정일섭,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전망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인식조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p. 78-79.

확실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공통체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육성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 중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에 대한 의결기능과 기부금 징수 및 관리의 의결기능에 대하여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노재원⁶⁶⁾은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학부모의 요구분석”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시에 대해 교사·학부모 모두 매우 관심이 크며 높은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구성에 있어서 운영위원의 정수는 11-15명 정도가 적당하고, 구성 비율은 교원의 비율을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자문기구 또는 심의 및 자문기구가 바람직하며, 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역할과 문제 발생시 중재·조정 기능을 가진 광역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감시·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임병태⁶⁷⁾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초등학교 교원들의 의식조사 연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위원회의 설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아

66) 노재원,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학부모의 요구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p. 68-69.

67) 임병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초등학교 교원들의 의식 조사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 42-45.

직까지 학교운영에 뚜렷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초등학교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염철인⁶⁸⁾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인식분석”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현장에 정착·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 및 연수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운영위원의 선출시 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위원의 구성비는 교원과 학부모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정당인은 위원을 겸임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넷째, 운영위원의 기능은 현재의 심의기능을 유지하되 사항에 따라 의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의 효과가 역효과나 갈등보다 더 높게 예상되고 있어,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사심없는 봉사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⁶⁹⁾

이상에서 살펴 본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들을 고찰한 결과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실현과 학교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학교운영에 대하여 학부모, 교사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기능적 효과의 개선점을 찾으려는데 있다. 이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해 이 연구와 관련된 몇 편의 선행연구를 살펴 보았다.

68) 염철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인식 분석”, 1996, pp. 73-74.

69) 염철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인식분석”, 1996, pp. 73-74.

Ⅲ. 研究의 方法

1. 調査 對象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교원과 학부모 900명(교원 500명,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된 설문지 중 자료처리가 가능한 724명(교원 454명, 학부모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유효 응답률은 교원 90.8%, 학부모 67.5%였으며, 전체적으로는 80.4%였다.

회수된 응답자의 변인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변인별 분포

구 분		교 원	학 부 모	계
지 역 별	도 시	266(58.6)	173(63.8)	439(60.6)
	농 촌	188(41.4)	98(36.2)	286(39.4)
성 별	남	160(35.2)	62(23.0)	222(30.7)
	여	294(64.8)	208(77.0)	502(69.3)
학 력 별	고 졸 이 하	3(0.7)	107(39.6)	110(15.2)
	전 문 대 졸	19(4.2)	48(17.8)	67(9.3)
	대 졸 이 상	432(95.2)	115(42.6)	547(75.5)
교육경력별	10년 미만	146(32.2)	.	146(32.2)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17.0)	.	77(17.0)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17.6)	.	80(17.6)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18.5)	.	84(18.5)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10.4)	.	47(10.4)
	30년 이상	20(4.4)	.	20(4.4)
연 령 별	30세 미만	.	12(4.4)	12(4.4)
	30세 이상 ~ 35세 미만	.	52(19.2)	52(19.2)
	35세 이상 ~ 40세 미만	.	123(45.4)	123(45.4)
	40세 이상 ~ 45세 미만	.	68(25.1)	68(25.1)
	45세 이상 ~ 50세 미만	.	14(5.2)	14(5.2)
	50세 이상	.	2(0.7)	2(0.7)
학교규모별	12학급 미만	80(17.6)	54(20.0)	134(18.5)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5.7)	6(2.2)	32(4.4)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7.5)	5(1.9)	39(5.4)
	36학급 이상	314(69.2)	205(75.9)	519(71.7)
전 체		454(100)	270(100)	724(100)

2. 說問紙의 構成과 內容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운영위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 등 3개 영역으로 제작하였다.

질문지의 각 문항은 5점 척도법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와 같다.

<표 3> 설문지의 영역별 구성 내용

영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문항수
점수	5	4	3	2	1	
심의 사항	심의 사항의 인지 여부					1
	심의 사항에 대한 인식					10
운영위원의 역할	운영위원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1
	운영위원의 심의 사항 수행능력에 대한 인식					9
활성화 방안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인식					2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					1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
	학교내 다른 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1
	심의 안전에 관한 사전 준비시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
	운영위원회의 공개에 대한 인식					1
계						29

3. 資料의 處理

회수된 설문지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교사의 각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 ANOVA 등을 실시하였고, 차이는 $P<.05$, $P<.01$, $P<.001$ 수준에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IV. 結果分析 및 解釋

본 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운영위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 해석하였다.

1. 學校運營委員會의 審議 事項에 對한 認識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인식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종류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266	3.21	1.03	-3.85	***	
	농 촌	188	3.56	0.87		0.0001	
성별	남	160	3.69	0.83	5.90	***	
	여	294	3.17	1.01		0.0001	
학력	고졸이하	3	3.33	2.08	0.14	0.8689	A
	전문대졸	19	3.47	1.02			A
	대졸이상	432	3.35	0.97			A
교육 경력	10년 미만	146	2.94	1.03	11.80	*** 0.0001	C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3.30	0.87			B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3.45	0.91			B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3.64	0.83			B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3.87	0.82			A
	30년 이상	20	3.85	1.04			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80	3.75	0.85	10.27	*** 0.0001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3.88	0.52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2.97	1.09			B
	36학급 이상	314	3.25	0.99			B

***p<.0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의 사항에 대한 교원의 인식의 경우에는 지역별($p<.001$), 성별($p<.001$), 교육경력($p<.001$), 학교규모($p<.001$)에 따라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여교원보다 남교원이, 교육경력이 높을수록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 규모별로는 24학급 이하가 25학급 이상보다 심의 사항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전문대졸, 대졸이상, 고졸이하의 순으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2.87	1.10	-0.11	0.9158	
	농 촌	98	2.89	1.15			
성 별	남	62	2.71	1.21	-1.39	0.1672	
	여	208	2.93	1.08			
학 력	고 졸 이 하	107	2.80	1.14	0.97	0.3789	A
	전 문 대 졸	48	2.79	1.11			A
	대 졸 이 상	115	2.99	1.10			A
연 령	30세 미 만	12	2.58	1.00	1.27	0.2784	A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2.94	0.89			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2.92	1.17			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2.69	1.16			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3.36	1.15			A
	50세 이 상	2	3.50	0.71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54	2.63	1.23	1.20	0.3095	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6	2.83	0.75			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5	2.80	0.84			A
	36학급 이 상	314	2.95	1.09			A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학부모의 인지도에 있어서 도시보다는 농촌이,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 규모가 클수록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각 배경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과정 운영 심의에 대한 인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교육과정 운영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2.89	1.11	-0.58	0.5646	
	농 촌	188	2.95	1.04			
성 별	남	160	2.99	1.12	1.10	0.2735	
	여	294	2.87	1.07			
학 력	고졸이하	3	2.67	1.53	0.82	0.4407	A
	전문대졸	19	3.21	0.85			A
	대졸이상	432	2.90	1.09			A
교 육 경 력	10년 미만	146	3.01	1.10	1.10	0.3577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2.77	1.07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2.81	1.09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2.98	1.01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2.79	1.06			A
	30년 이상	20	3.20	1.28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만	80	3.01	1.10	2.69	0.0456	B,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3.38	0.80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3.06	1.01			B,A
	36학급 이상	314	2.83	1.10			B

*p<.05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의 심의에 대하여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 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5) 도시보다는 농촌, 여교원보다는 남교원이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 교육경력 면에서는 교육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학교 규모별로는 대규모 학교에 비해 소규모 학교 교원의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각 배경변인별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교육과정 운영 심의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173	3.54	1.15	-0.49	0.6211	
	농 촌	98	3.61	1.01			
성별	남	62	3.53	1.16	-0.31	0.7568	
	여	208	3.58	1.09			
학력	고졸이하	107	3.66	1.00	1.33	0.2653	A
	전문대졸	48	3.67	0.81			A
	대졸이상	115	3.44	1.28			A
연령	30세 미만	12	3.08	1.31	1.14	0.3392	A
	30세 이상 ~ 35세 미만	52	3.42	1.35			A
	35세 이상 ~ 40세 미만	123	3.67	1.01			A
	40세 이상 ~ 45세 미만	68	3.63	0.98			A
	45세 이상 ~ 50세 미만	14	3.29	1.14			A
	50세 이상	2	4.00	1.41			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54	3.78	0.92	1.46	0.2261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6	3.50	1.38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5	4.20	0.84			A
	36학급 이상	314	3.50	1.14			A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도는 도시보다 농촌이, 남자보다 여자가, 저학력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각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도에 있어서 교원(M=2.96)에 비해 학부모(M=3.59)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매우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교과용도서와 부교재 선정 심의에 대한 인식

“교과용도서와 부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도서 선정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3.65	1.15	0.08	0.9365	
	농 촌	188	3.14	1.01			
성 별	남	160	3.24	1.07	1.45	0.1485	
	여	294	3.09	1.10			
학 력	고 졸 이 하	3	2.67	1.53	0.52	0.5927	A
	전 문 대 졸	19	3.32	1.11			A
	대 졸 이 상	432	3.14	1.09			A
교 육 경 력	10년 미 만	146	3.26	1.09	0.68	0.6365	A
	10년 이 상 ~ 15년 미 만	77	3.09	1.17			A
	15년 이 상 ~ 20년 미 만	80	3.03	1.02			A
	20년 이 상 ~ 25년 미 만	84	3.15	1.07			A
	25년 이 상 ~ 30년 미 만	47	3.13	1.10			A
	30년 이 상	20	2.95	1.23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80	3.21	1.00	3.09	* 0.0268	B,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26	3.38	0.85			B,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34	3.59	0.96			A
	36학급 이 상	314	3.06	1.13			B

*p<.05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 선정에 대한 교원의 인식도는 학교 규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를 나타내고 다른 배경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서 선정에 대한 교원들의 각 배경변인별로는 농촌보다는 도시가, 여교원보다는 남교원이, 고학력일수록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교육경력에 있어서는 10년 미만, 20-25년, 10-20년, 30년 이상의 순으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도서 선정 심의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교육경력이 짧은 교원들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 선정에 교원이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추세이다.

<표 6-1> 도서 선정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49	1.04	-0.75	0.4514	
	농 촌	98	3.59	1.08			
성 별	남	62	3.60	1.00	0.57	0.5689	
	여	208	3.51	1.07			
학 력	고 졸 이 하	107	3.57	1.02	0.95	0.3886	A
	전 문 대 졸	48	3.67	1.02			A
	대 졸 이 상	115	3.43	1.10			A
연 령	30세 미 만	12	3.00	0.85	0.65	0.6613	A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3.58	1.07			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3.54	1.07			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3.57	1.06			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3.50	1.09			A
	50세 이 상	2	3.50	0.71			A
학 교 규 모	12학 급 미 만	54	3.69	1.02	1.85	0.1390	A
	12학 급 이 상 ~ 24학 급 이 하	6	3.67	1.21			A
	25학 급 이 상 ~ 35학 급 이 하	5	4.40	0.89			A
	36학 급 이 상	314	3.46	1.05			A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 선정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도는 도시보다 농촌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학력별로는 전문대, 고졸이하, 대졸이상의 순으로, 학교 규모별로는 35학급 이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각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도서 선정에 대한 인식도에서 교원(M=3.67 이하)보다 학부모(M=3.00 이상)의 평균치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원 학부모간에는 도서 선정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서 선정에 대한 심의가 바람직하다는 인식도에 있어서 교원보다는 학부모가, 교육경력에 있어서는 경력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난 현상은 교육풍토가 공급자 중심의 관행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과, 교육과정 운영을 교원들이 능동적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4) 정규학습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한 인식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규학습 이외의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정규 학습 이외의 교육활동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3.26	1.05	-0.77	0.4435	
	농 촌	188	3.33	0.99			
성 별	남	160	3.44	0.98	2.37	*	0.0181
	여	294	3.20	1.04			
학 력	고졸이하	3	2.67	1.53	0.61	0.5438	A
	전문대졸	19	3.21	1.13			A
	대졸이상	432	3.29	1.02			A
교 육 경 력	10년 미만	146	3.27	1.00	0.84	0.5250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3.40	1.13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3.13	0.96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3.27	1.08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3.45	0.97			A
	30년 이상	20	3.30	0.98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만	80	3.41	0.98	3.29	*	B,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3.42	0.86			B,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3.71	0.76			A
	36학급 이상	314	3.20	1.06			B

*p<.05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규학습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의 인식도에서는 성별과 학교 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성별로는 여교원 보다는 남교원이 학교 규모별로는 25-35학급 이하, 24학급 이하, 36학급 이상의 순으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배경변인별로는 도시보다 농촌이,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전문대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배경변인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7-1> 정규학습 이외의 교육활동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54	0.95	1.99	*	
	농 촌	98	3.28	1.13			
성 별	남	62	3.24	1.15	-1.81	0.0711	
	여	208	3.51	0.98			
학 력	고 졸 이 하	107	3.33	1.12	1.55	0.2145	A
	전 문 대 졸	48	3.63	0.79			A
	대 졸 이 상	115	3.49	1.01			A
연 령	30세 미 만	12	3.08	0.79	1.29	0.2663	A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3.67	0.94			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3.40	1.11			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3.35	0.96			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3.79	0.89			A
	50세 이 상	2	3.50	0.71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54	3.46	0.97	0.64	0.5898	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6	3.17	1.47			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5	4.00	0.71			A
	36학급 이 상	314	3.44	1.03			A

*p<.05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규학습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인식도에서 학부모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정규학습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배경변인별 인식도는 농촌보다 도시가, 남자 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 졸, 대졸 이상, 고졸 이하의 순으로, 연령별로는 30세 이상의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검증결과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규학습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배경변인에 상관없이 교원과 학부모 모두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원과 학부모 모두가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고, 학교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방과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학교현장, 학칙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심의에 대한 인식

“학교현장, 학칙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학칙 등 제 규정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3.34	1.07	-0.91	0.3646	
	농 촌	188	3.43	0.96			
성 별	남	160	3.53	0.98	2.46	*	
	여	294	3.29	1.04			
학 력	고졸이하	3	2.67	1.53	0.74	0.4801	A
	전문대졸	19	3.42	0.90			A
	대졸이상	432	3.38	1.03			A
교 육 경 력	10년 미만	146	3.42	1.03	0.70	0.6248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3.38	1.08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3.24	0.93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3.50	0.96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3.30	1.08			A
	30년 이상	20	3.25	1.29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만	80	3.44	0.93	2.06	0.1050	B,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3.81	0.63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3.44	0.93			B,A
	36학급 이상	314	3.32	1.08			B

*p<.05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칙 등 제 규정 심의에 대한 인식도에 서 교원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학칙 등 제 규정에 대한 교원의 인식도는 학력과 교육경력에서 평균값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지역과 교육경력, 학교 규모 면에서 인식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생활지도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려는 교원들의 의지가 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1> 학칙 등 제 규정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49	0.99	-1.54	0.1246	
	농 촌	98	3.68	1.07			
성 별	남	62	3.52	1.16	-0.38	0.7055	
	여	208	3.57	0.98			
학 력	고 졸 이 하	107	3.56	1.13	0.73	0.4814	A
	전 문 대 졸	48	3.71	0.92			A
	대 졸 이 상	115	3.50	0.96			A
연 령	30세 미 만	12	3.00	1.21	1.97	0.0837	B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3.67	0.90			B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3.48	1.04			B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3.63	0.98			B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3.71	1.14			B
	50세 이 상	2	5.00	0.00			A
학 교 규 모	12학 급 미 만	54	3.59	1.02	0.09	0.9681	A
	12학 급 이 상 ~ 24학 급 이 하	6	3.67	1.51			A
	25학 급 이 상 ~ 35학 급 이 하	5	3.40	1.34			A
	36학 급 이 상	314	3.55	1.01			A

<표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칙 등 제 규정 심의에 대한 인식도에서 학부모의 경우에는 도시 보다 농촌이, 여자보다 남자가, 학력면에서는 전문대, 고졸 이하, 대학 이상의 순으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학부모의 경우 제 규정 심의에 대한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든 배경변인에서의 인식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연령에서 50세 이하에서는 통계적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0세 이상의 인식도는 5.00으로서 아동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심의에 대한 인식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3.84	0.87	0.10	0.9186	
	농 촌	188	3.83	0.89			
성 별	남	160	3.92	0.83	1.51	0.1327	
	여	294	3.79	0.90			
학 력	고졸 이하	3	2.67	1.53	2.73	0.0660	B
	전문대졸	19	3.79	0.98			A
	대졸 이상	432	3.84	0.87			A
교 육 경 력	10년 미만	146	3.91	0.75	2.06	0.0687	B,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3.90	0.91			B,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3.56	0.98			B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3.90	0.82			B,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3.79	0.88			B,A
	30년 이상	20	3.95	1.23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만	80	3.95	0.79	1.90	0.1290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4.04	0.53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4.00	0.65			A
	36학급 이상	314	3.77	0.93			A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심의에 대한 인식도에서 교원의 경우에는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원들이 학교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교육활동의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9-1>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4.05	0.85	1.73	0.0853	
	농 촌	98	3.85	1.08			
성 별	남	62	3.97	0.94	-0.10	0.9243	
	여	208	3.98	0.95			
학 력	고 졸 이 하	107	3.80	1.10	4.60	*	B
	전 문 대 졸	48	3.90	0.88			B,A
	대 졸 이 상	115	4.17	0.76			A
연 령	30세 미 만	12	3.33	1.37	1.89	0.0966	B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4.13	0.79			B,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3.90	0.98			B,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4.07	0.87			B,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4.07	0.92			B,A
	50세 이 상	2	4.50	0.71			A
학 교 규 모	12학 급 미 만	54	4.17	0.72	0.93	0.4268	A
	12학 급 이 상 ~ 24학 급 이 하	6	3.83	1.17			A
	25학 급 이 상 ~ 35학 급 이 하	5	4.00	1.00			A
	36학 급 이 상	314	3.93	0.99			A

*p<.05

<표 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심의에 대한 인식도에서 학부모의 경우에는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p<.05) 전체적으로는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인식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에서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심의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교원과 학부모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바람직하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원과 학부모 모두가 학교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투명한 교육활동으로 교육 수요자들에게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경영자의 독단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부정적인 면의 가능성을 견제하려는 인식이 작용한 때문이라 해석된다.

7) 학교운영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에 대한 인식

“학교운영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학교운영비 예·결산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3.51	0.98	1.02	0.3708	
	농 촌	188	3.41	1.02			
성 별	남	160	3.48	1.00	0.13	0.8996	
	여	294	3.46	1.00			
학 력	고졸이하	3	2.33	1.15	2.64	0.0723	B
	전문대졸	19	3.74	0.93			A
	대졸이상	432	3.46	1.00			A
교 육 경 력	10년 미만	146	3.55	0.98	0.56	0.7310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3.42	1.13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3.34	0.99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3.50	0.94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3.43	0.95			A
	30년 이상	20	3.55	1.10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만	80	3.39	1.01	2.88	0.0357	B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3.81	0.75			B,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3.82	0.94			A
	36학급 이상	314	3.42	1.01			B,A

*p<.05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비 예·결산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도는 학교 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5)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고학력일수록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 운영비 심의에 대하여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인식도가 고르고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교원들이 학교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교육 활동의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표 10-1> 학교운영비 예·결산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173	3.84	1.00	-0.64	0.5250	
	농 촌	98	3.92	0.78			
성 별	남	62	3.89	0.93	0.16	0.8716	
	여	208	3.87	0.93			
학 력	고졸이하	107	3.89	0.82	0.09	0.9184	A
	전문대졸	48	3.90	0.81			A
	대졸이상	115	3.84	1.06			A
연 령	30세 미만	12	3.00	1.35	2.57	0.0270	B
	30세 이상 ~ 35세 미만	52	3.83	1.10			B,A
	35세 이상 ~ 40세 미만	123	3.91	0.85			B,A
	40세 이상 ~ 45세 미만	68	3.93	0.80			B,A
	45세 이상 ~ 50세 미만	14	4.14	0.66			A
	50세 이상	2	4.00	1.41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만	54	3.89	0.82	0.57	0.6321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6	4.33	0.82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5	4.00	1.00			A
	36학급 이상	314	3.85	0.96			A

*p<.05

<표 1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비 예·결산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도는 연령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5)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촌이, 여자보다는 남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면에서는 전문대졸, 고졸이하, 대졸이상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연령적으로는 45세 이상의 인식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규모별로는 12학급~35학급 규모에서 인식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운영비 심의에 대하여 교원과 학부모 모두가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학교운영비의 심의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교원들에 비해 학부모들의 인식도가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학부모들이 학교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경영자의 독단적인 학교 경영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8) 학교 발전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심의에 대한 인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1>와 같다.

<표 11> 학교 발전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266	3.82	0.91	0.97	0.3337	
	농 촌	188	3.73	1.04			
성별	남	160	3.85	1.00	1.11	0.2667	
	여	294	3.74	0.94			
학력	고졸이하	3	2.67	1.53	2.07	0.1276	B
	전문대졸	19	3.84	1.07			A
	대졸이상	432	3.79	0.95			A
교육 경력	10년 미만	146	3.80	0.96	0.23	0.9503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3.81	0.96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3.69	1.00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3.83	0.92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3.77	0.91			A
	30년 이상	20	3.75	1.21			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80	3.79	0.99	4.26	0.0055	B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4.19	0.63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4.18	0.76			A
	36학급 이상	314	3.70	0.98			B

*p<.05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발전 기금 조성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도는 학교 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5)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가, 여교원보다는 남교원이, 고학력일수록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경력별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학교 규모별로는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 교원의 인식도가 중간 규모의 학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학교 발전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173	3.94	0.92	0.24	0.8086	
	농 촌	98	3.91	0.92			
성 별	남	62	4.00	0.92	0.72	0.4719	
	여	208	3.90	0.922			
학 력	고 졸 이 하	107	3.90	0.97	0.58	0.5597	A
	전 문 대 졸	48	3.83	0.97			A
	대 졸 이 상	115	3.99	0.85			A
연 령	30세 미 만	12	3.17	1.19	2.15	0.0601	B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4.04	0.86			B,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3.90	0.92			B,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4.01	0.87			B,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3.86	0.95			B,A
	50세 이 상	2	4.50	0.71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54	3.96	0.82	1.58	0.1936	B,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6	4.67	0.52			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5	3.60	0.55			B
	36학급 이 상	314	3.90	0.95			B,A

<표 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발전 기금 조성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도는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가, 여자보다 남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으나 평균값이 3.90 이상으로 학교 발전 기금 조성 심의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값으로 볼 때 교원과 학부모 모두가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학교 발전 기금 조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교원은 학부모를 상대로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대한 부담감이 있고, 학부모는 그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9) 학교장과 교사의 초빙에 관한 사항 심의에 대한 인식

“학교장과 교사의 초빙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학교장과 교사의 초빙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266	3.17	1.06	-0.10	0.1985	
	농 촌	188	3.18	1.00			
성별	남	160	3.34	1.01	2.59	*	0.0101
	여	294	3.08	1.04			
학력	고졸이하	3	2.67	1.53	0.83	0.4385	A
	전문대졸	19	2.95	1.13			A
	대졸이상	432	3.18	1.03			A
교육 경력	10년 미만	146	3.29	1.03	1.28	0.2710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3.13	1.07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2.96	1.05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3.25	0.93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3.11	0.96			A
	30년 이상	20	3.05	1.39			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80	3.13	1.02	1.82	0.1435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3.23	0.82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3.56	0.99			A
	36학급 이상	314	3.13	1.06			A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장과 교사 초빙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도는 성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p < .05$), 다른 배경변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장과 교사 초빙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하여 지역별로는 도시와 농촌에서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교원 보다 남교원이, 학력면에서는 고학력일수록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 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배경변인에 상관없이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 학교장과 교사의 초빙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23	1.02	-1.88	0.0618	
	농 촌	98	3.47	1.04			
성 별	남	62	3.21	1.13	-0.91	0.3632	
	여	208	3.35	1.01			
학 력	고 졸 이 하	107	3.38	1.06	2.08	0.1265	A
	전 문 대 졸	48	3.50	1.01			A
	대 졸 이 상	115	3.17	1.01			A
연 령	30세 미 만	12	2.92	1.00	0.96	0.4418	A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3.15	0.94			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3.37	1.01			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3.44	1.06			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3.14	1.46			A
	50세 이 상	2	3.50	0.71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54	3.30	0.94	2.43	0.0654	B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6	4.33	1.21			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5	3.80	0.45			B,A
	36학급 이 상	314	3.28	1.05			B

<표 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장과 교사 초빙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도는 모든 배경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균값으로는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장과 교사 초빙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하여 도시보다는 농촌이, 남자보다는 여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 연령별에서는 평균값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로는 12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급과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 비해 중간 규모인 12학급 이상 35학급 이하에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원보다 학부모의 긍정적인 면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원들의 인사권도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하며, 교원의 인사권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된다.

10)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사항의 심의에 대한 인식

“학부모 및 일반인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사항의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3.61	0.93	1.95	0.0522	
	농 촌	188	3.44	0.91			
성 별	남	160	3.54	0.96	-0.07	0.9413	
	여	294	3.54	0.91			
학 력	고 졸 이 하	3	2.67	1.53	1.43	0.2399	A
	전 문 대 졸	19	3.63	0.90			A
	대 졸 이 상	432	3.54	0.92			A
교 육 경 력	10년 미 만	146	3.60	0.87	0.57	0.7262	A
	10년 이 상 ~ 15년 미 만	77	3.58	0.95			A
	15년 이 상 ~ 20년 미 만	80	3.40	1.06			A
	20년 이 상 ~ 25년 미 만	84	3.51	0.87			A
	25년 이 상 ~ 30년 미 만	47	3.55	0.83			A
	30년 이 상	20	3.60	1.14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80	3.44	0.94	1.54	0.2038	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26	3.42	0.86			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34	3.82	0.83			A
	36학급 이 상	314	3.55	0.94			A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 및 일반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사항 심의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배경요인에 관계없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으로 볼 때 긍정적인 면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별 인식도는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 남녀 평등의 교육기회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이 나타나며,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이, 학력이 높을수록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3-1>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사항의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62	0.89	0.40	0.6906	
	농 촌	98	3.57	1.01			
성 별	남	62	3.48	1.02	-1.12	0.2656	
	여	208	3.63	0.91			
학 력	고졸이하	107	3.46	1.04	2.25	0.1073	A
	전문대졸	48	3.63	0.94			A
	대졸이상	115	3.72	0.81			A
연 령	30세 미만	12	3.33	0.98	1.73	0.1291	A
	30세 이상 ~ 35세 미만	52	3.81	0.77			A
	35세 이상 ~ 40세 미만	123	3.50	0.94			A
	40세 이상 ~ 45세 미만	68	3.57	1.00			A
	45세 이상 ~ 50세 미만	14	4.07	1.00			A
	50세 이상	2	3.50	0.71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만	54	3.44	0.14	0.99	0.3987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6	4.00	1.10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5	3.80	0.45			A
	36학급 이상	314	3.62	0.91			A

<표 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 및 일반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사항 심의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배경요인에 관계없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으로 볼 때 긍정적인 면이 높게 나타났다(M=3.33 이상).

학부모 및 일반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사항 심의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평균값으로 볼 때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가,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교원과 학부모 모두가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 학교에서의 학부모와 일반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이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11) 학교내 다른 조직 운영 사항의 심의에 대한 인식

“학교내 다른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학교내 다른 조직 운영 사항의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266	3.42	1.05	1.44	0.1506	
	농 촌	188	3.28	1.01			
성별	남	160	3.30	1.06	-0.90	0.3702	
	여	294	3.39	1.02			
학력	고졸이하	3	2.67	1.53	1.63	0.1962	A
	전문대졸	19	3.68	1.00			A
	대졸이상	432	3.35	1.03			A
교육 경력	10년 미만	146	3.47	1.03	0.57	0.7249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3.27	1.15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3.30	1.02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3.31	0.96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3.32	1.00			A
	30년 이상	20	3.40	1.05			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80	3.18	1.02	3.84	0.0099	B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3.38	0.85			B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3.88	0.98			A
	36학급 이상	314	3.35	1.04			B

*p<.05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내 다른 조직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원들의 인식도는 학교 규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p<.05). 학교내 다른 조직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가, 성별로는 남교원보다 여교원이 높았으며, 학력, 교육경력에서는 평균값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14-1> 학교내 다른 조직 운영 사항의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57	1.02	1.04	0.3014	
	농 촌	98	3.43	1.10			
성 별	남	62	3.39	1.19	-1.09	0.2783	
	여	208	3.55	1.01			
학 력	고졸이하	107	3.45	1.08	0.96	0.3836	A
	전문대졸	48	3.42	1.05			A
	대졸이상	115	3.62	1.03			A
연 령	30세 미만	12	3.25	1.06	2.02	0.0768	B,A
	30세 이상 ~ 35세 미만	52	3.87	0.99			A
	35세 이상 ~ 40세 미만	123	3.41	1.05			B,A
	40세 이상 ~ 45세 미만	68	3.50	1.04			B,A
	45세 이상 ~ 50세 미만	14	3.64	1.08			A
	50세 이상	2	2.50	2.12			B
학 교 규 모	12학급 미만	54	3.43	0.98	0.34	0.7930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6	3.83	1.17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5	3.40	0.55			A
	36학급 이상	314	3.53	1.08			A

<표 1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내 다른 조직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배경요인에 관계없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내 다른 조직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농촌보다는 도시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으로 볼 때 학력과 연령,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값의 분포로 볼 때 긍정적인 면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교원들에 비해 학부모들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현재 학교내 조직들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운영되는데 따른 부정적인 면을 상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조직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넓혀 보려는 의지가 교원에 비해 학부모들의 의지가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學校運營委員會의 運營委員의 役割에 對한 認識

1) 교사위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우리 학교의 교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교사위원의 역할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266	3.56	0.89	3.41	**	
	농 촌	188	3.26	0.94		0.0007	
성별	남	160	3.40	1.01	-0.62	0.5389	
	여	294	3.46	0.87			
학력	고졸이하	3	3.67	0.58	0.11	0.8944	A
	전문대졸	19	3.47	1.07			A
	대졸이상	432	3.43	0.92			A
교육 경력	10년 미만	146	3.53	0.86	0.87	0.4984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3.38	0.96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3.28	0.99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3.45	0.88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3.49	0.93			A
	30년 이상	20	3.45	1.10			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80	3.21	0.95	5.16	** 0.0016	B,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3.15	0.67			B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3.15	0.78			B
	36학급 이상	314	3.55	0.93			A

**p<.01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교원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바람직하다는 교원들의 인식도는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 지역이, 성별로는 여교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과 교육경력에 따라서는 평균값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15-1> 학부모위원의 역할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173	3.65	0.79	2.75	** 0.0066	
	농 촌	98	3.37	0.84			
성별	남	62	3.42	0.82	-1.41	0.1592	
	여	208	3.59	0.82			
학력	고졸이하	107	3.47	0.80	2.24	0.1086	A
	전문대졸	48	3.44	0.58			A
	대졸이상	115	3.67	0.91			A
연령	30세 미만	12	3.08	0.67	7.55	*** 0.0001	B
	30세 이상 ~ 35세 미만	52	4.06	0.87			A
	35세 이상 ~ 40세 미만	123	3.52	0.75			B,A
	40세 이상 ~ 45세 미만	68	3.43	0.72			B,A
	45세 이상 ~ 50세 미만	14	2.93	0.92			B
	50세 이상	2	3.50	0.71			B,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54	3.35	0.68	1.43	0.2353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6	3.50	0.55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5	3.40	1.14			A
	36학급 이상	314	3.60	0.85			A

p<.01, *p<.001

<표 1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 위원들의 역할이 바람직하다는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연령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p<.01$),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05$)

학부모 위원들의 역할이 바람직하다는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가, 남자보다는 여자의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 35세, 35세 ~ 40세, 50세 이상, 40세 ~ 45세, 30세 미만, 45세 ~ 50세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규모별로는 36학급 이상, 12학급 ~ 24학급, 25학급 ~ 35학급, 12학급의 순으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 평균값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학부모·지역위원의 교육과정 운영 지식·식견에 대한 인식

“학부모·지역위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학부모·지역위원의 교육과정 운영 지식·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2.65	0.93	3.14	** 0.0018	
	농 촌	188	2.40	0.79			
성 별	남	160	2.48	0.85	-1.31	0.1921	
	여	294	2.59	0.90			
학 력	고 졸 이 하	3	2.67	1.53	0.04	0.9616	A
	전 문 대 졸	19	2.58	0.84			A
	대 졸 이 상	432	2.55	0.88			A
교 육 경 력	10년 미 만	146	2.68	0.95	1.29	0.2650	A
	10년 이 상 ~ 15년 미 만	77	2.56	0.73			A
	15년 이 상 ~ 20년 미 만	80	2.41	0.90			A
	20년 이 상 ~ 25년 미 만	84	2.45	0.84			A
	25년 이 상 ~ 30년 미 만	47	2.51	0.91			A
	30년 이 상	20	2.55	0.94			A
학 교 규 모	12학 급 미 만	80	2.29	0.72	4.28	** 0.0054	B
	12학 급 이 상 ~ 24학 급 이 하	26	2.27	0.67			B
	25학 급 이 상 ~ 35학 급 이 하	34	2.68	0.88			A
	36학 급 이 상	314	2.62	0.92			B,A

**p<.01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교원들의 인식도는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가,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과 교육경력별로는 평균값으로 볼 때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검증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평균값으로 볼 때 모든 배경변인에서 학부모·지역위원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6-1> 학부모·지역위원의 교육과정 운영 지식·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173	3.33	0.90	2.19	*	
	농 촌	98	3.08	0.89		0.0299	
성별	남	62	3.02	1.02	-2.01	*	
	여	208	3.30	0.86		0.0468	
학력	고졸이하	107	3.33	0.91	2.51	0.0829	A
	전문대졸	48	3.38	0.89			A
	대졸이상	115	3.10	0.90			A
연령	30세 미만	12	3.00	0.60	2.88	*	A
	30세 이상 ~ 35세 미만	52	3.56	0.87			A
	35세 이상 ~ 40세 미만	123	3.28	0.90			A
	40세 이상 ~ 45세 미만	68	3.06	0.90			A
	45세 이상 ~ 50세 미만	14	2.79	1.05			A
	50세 이상	2	3.00	0.00			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54	3.28	0.76	0.18	0.9132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6	3.00	1.10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5	3.20	0.84			A
	36학급 이상	314	3.23	0.94			A

*p<.05

<표 1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학부모·지역위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서, 성별로는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으로 볼 때 학력, 연령, 학교 규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3) 학부모·지역위원의 도서 선정 지식·식견에 대한 인식

“학부모·지역위원이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 선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학부모·지역위원의 도서 선정 지식·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2.53	0.90	2.41	*	
	농 촌	188	2.34	0.84			
성 별	남	160	2.44	0.90	-0.14	0.8897	
	여	294	2.46	0.87			
학 력	고졸이하	3	2.33	1.15	0.44	0.6471	A
	전문대졸	19	2.63	0.96			A
	대졸이상	432	2.44	0.88			A
교 육 경 력	10년 미만	146	2.53	0.95	0.49	0.7875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2.45	0.87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2.35	0.80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2.40	0.87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2.45	0.88			A
	30년 이상	20	2.50	0.89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만	80	2.18	0.67	4.33	** 0.0050	B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2.23	0.65			B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2.62	0.89			A
	36학급 이상	314	2.52	0.93			B,A

*p<.05, **p<.01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이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 선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학교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1) 지역적인 배경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가, 성별로는 남교원보다 여교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과 교육경력별로는 평균값으로 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모든 배경변인의 인식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볼 때 교원들의 학부모와 지역위원들에 대한 교육용 도서 및 부교재 선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교원들과 학부모·지역위원 사이에 있어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7-1> 학부모·지역위원의 도서 선정 지식·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24	0.99	1.44	0.1510	
	농 촌	98	3.06	1.00			
성 별	남	62	3.03	1.06	-1.31	0.1927	
	여	208	3.22	0.98			
학 력	고 졸 이 하	107	3.30	1.03	2.10	0.1243	A
	전 문 대 졸	48	3.25	0.93			A
	대 졸 이 상	115	3.03	0.99			A
연 령	30세 미 만	12	3.00	0.85	0.56	0.7307	A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3.35	0.99			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3.18	0.98			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3.07	1.03			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3.14	1.29			A
	50세 이 상	2	3.50	0.71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54	3.28	1.00	1.26	0.2882	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6	2.67	1.21			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5	2.60	0.55			A
	36학급 이 상	314	3.18	1.00			A

<표 1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이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 선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도서 선정에 관한 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하여 교원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 선정에 관하여 교원과 학부모들 간에는 전문적 지식과 식견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 학부모·지역위원의 방과후 교육활동 지식·식견에 대한 인식

“학부모·지역위원이 방과후 교육활동 지식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방과후 교육활동 지식·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266	2.66	0.90	2.23	*	0.0266
	농 촌	188	2.48	0.76			
성별	남	160	2.60	0.83	0.26	0.7943	
	여	294	2.58	0.86			
학력	고졸이하	3	2.33	1.15	0.26	0.7700	A
	전문대졸	19	2.68	0.89			A
	대졸이상	432	2.58	0.85			A
교육 경력	10년 미만	146	2.68	0.97	0.75	0.5901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2.56	0.82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2.46	0.81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2.55	0.73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2.62	0.82			A
	30년 이상	20	2.60	0.68			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80	2.43	0.67	2.78	*	B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2.50	0.58			B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2.91	0.90			A
	36학급 이상	314	2.60	0.89			B,A

*p<.05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이 방과후 교육활동 지식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학부모·지역위원의 방과후 교육활동 지식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가, 성별로는 여교원보다 남교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과 교육경력에서는 평균값으로 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학교 규모에서는 25학급~35학급, 36학급 이상, 12학급~24학급, 12학급 미만의 순으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배경변인의 평균값으로 볼 때 교원들의 학부모·지역위원이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도는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표 18-1> 방과후 교육활동 지식·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16	0.91	0.16	0.8726	
	농 촌	98	3.14	0.97			
성 별	남	62	3.13	1.05	-0.25	0.7998	
	여	208	3.16	0.90			
학 력	고 졸 이 하	107	3.21	0.96	3.45	*	B,A
	전 문 대 졸	48	3.40	0.82			A
	대 졸 이 상	115	3.00	0.94			B
연 령	30세 미 만	12	2.67	0.65	1.37	0.2353	B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3.33	0.98			B,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3.13	0.93			B,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3.13	0.88			B,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3.14	1.10			B,A
	50세 이 상	2	4.00	1.41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54	3.37	0.90	2.53	0.0575	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6	2.50	1.22			B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5	3.60	0.55			A
	36학급 이 상	314	3.11	0.93			B,A

*p<.05

<표 1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이 방과후 교육활동 지식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학부모·지역위원이 방과후 교육활동 지식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지역별로는 도시가, 성별로는 여자의 인식도가 높은 나타났다.

학부모·지역위원이 방과후 교육활동 지식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평균값으로 볼 때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지식과 식견의 인식도가 교원 자신들에 비하여 학부모들의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원과 학부모간에 정규시간 이외의 학생 교육활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에 대한 견해차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5) 학부모 · 지역위원의 제 규정 지식에 대한 인식

“학부모 · 지역위원의 학칙 등 제 규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9>과 같다.

<표 19> 학부모 · 지역위원의 제 규정 지식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2.60	0.83	1.65	0.2521	
	농 촌	188	2.52	0.75			
성 별	남	160	2.63	0.81	1.16	0.2455	
	여	294	2.53	0.79			
학 력	고 졸 이 하	3	2.33	1.15	0.90	*	A
	전 문 대 졸	19	2.79	0.63			A
	대 졸 이 상	432	2.56	0.80			A
교 육 경 력	10년 미 만	146	2.57	0.87	0.10	0.9925	A
	10년 이 상 ~ 15년 미 만	77	2.56	0.79			A
	15년 이 상 ~ 20년 미 만	80	2.53	0.80			A
	20년 이 상 ~ 25년 미 만	84	2.61	0.71			A
	25년 이 상 ~ 30년 미 만	47	2.55	0.75			A
	30년 이 상	20	2.60	0.82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80	2.43	0.69	2.35	0.0714	B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26	2.77	0.59			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34	2.79	0.77			A
	36학급 이 상	314	2.56	0.83			B,A

*p<.05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 · 지역위원이 학칙 등 제 규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학부모 · 지역위원이 학칙 등 제 규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지역적으로는 도시가, 성별로는 남 교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과 교육경력에서는 평균값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각 배경변인별 평균값으로 볼 때 교원들의 학부모 · 지역위원에 대한 인식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19-1> 학부모·지역위원의 제 규정 지식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173	3.23	0.85	-0.53	0.5970	
	농 촌	98	3.29	0.98			
성별	남	62	3.15	1.04	-1.03	0.3060	
	여	208	3.28	0.86			
학력	고졸 이하	107	3.36	0.96	3.29	*	B,A
	전문대졸	48	3.40	0.92			A
	대졸 이상	115	3.09	0.81			B
연령	30세 미만	12	2.67	0.78	1.41	0.2210	A
	30세 이상 ~ 35세 미만	52	3.38	0.77			A
	35세 이상 ~ 40세 미만	123	3.22	0.91			A
	40세 이상 ~ 45세 미만	68	3.31	0.89			A
	45세 이상 ~ 50세 미만	14	3.14	1.29			A
	50세 이상	2	3.50	0.71			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54	3.39	0.94	0.66	0.5760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6	3.00	1.55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5	3.20	0.45			A
	36학급 이상	314	3.22	0.88			A

*p<.05

<표 1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이 학칙 등 제 규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평균값으로 볼 때 학부모들의 학부모·지역위원의 학칙 등 제 규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에 대한 인식도는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고졸 이하, 대졸 이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과 학교 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학부모·지역위원이 학칙 등 제 규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낮게 인식되고 있는데 반하여 학부모들은 대체로 높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어 교원들과 학부모·지역위원간에 전문적 지식과 식견에 대한 견해차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6) 수학여행 등 교외 교육활동에 대한 지식·식견에 대한 인식

“학부모·지역위원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교외 교육활동의 지식·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2.82	0.87	2.18	*	
	농 촌	188	2.65	0.77		0.0299	
성 별	남	160	2.76	0.82	0.17	0.8629	
	여	294	2.75	0.85			
학 력	고 졸 이 하	3	2.33	1.15	0.90	0.4071	A
	전 문 대 졸	19	2.95	0.52			A
	대 졸 이 상	432	2.75	0.84			A
교 육 경 력	10년 미 만	146	2.80	0.90	0.23	0.9477	A
	10년 이 상 ~ 15년 미 만	77	2.69	0.80			A
	15년 이 상 ~ 20년 미 만	80	2.73	0.83			A
	20년 이 상 ~ 25년 미 만	84	2.77	0.78			A
	25년 이 상 ~ 30년 미 만	47	2.74	0.77			A
	30년 이 상	20	2.70	0.98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80	2.56	0.71	1.89	0.1313	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26	2.88	0.59			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34	2.85	0.74			A
	36학급 이 상	314	2.78	0.89			A

*p<.05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5$) 평균값으로 볼 때 교원들의 인식도는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가, 성별로는 남교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 교육경력, 학교 규모에서는 평균값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20-1> 교외 교육활동의 지식·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38	0.97	0.66	0.5072	
	농 촌	98	3.30	0.92			
성 별	남	62	3.23	0.93	-1.12	0.2635	
	여	208	3.38	0.96			
학 력	고 졸 이 하	107	3.39	0.92	1.02	0.3607	A
	전 문 대 졸	48	3.46	0.82			A
	대 졸 이 상	115	3.25	1.02			A
연 령	30세 미 만	12	3.08	1.08	1.20	0.3073	A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3.56	1.14			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3.29	0.86			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3.40	0.93			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3.00	0.88			A
	50세 이 상	2	3.50	0.71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54	3.35	0.78	0.19	0.9028	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6	3.17	1.47			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5	3.60	0.55			A
	36학급 이 상	314	3.34	0.99			A

<표 2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으로 볼 때 교원들에 비해 학부모들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지역위원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지역별로는 도시가, 성별로는 여자의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연령, 학교 규모에서는 평균값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대체로 아동들의 교외 교육활동에 관한 학부모·지역위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에 대하여 교사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아동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지역위원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7) 학교운영비 예·결산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인식

“학부모·지역위원은 학교운영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학교운영비 예·결산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2.72	0.85	4.31	*** 0.0001	
	농 촌	188	2.40	0.74			
성 별	남	160	2.51	0.79	-1.45	0.1484	
	여	294	2.63	0.84			
학 력	고졸 이하	3	2.33	1.15	0.28	0.7596	A
	전문대졸	19	2.68	0.67			A
	대졸 이상	432	2.59	0.83			A
교 육 경 력	10년 미만	146	2.66	0.90	0.51	0.7673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2.53	0.80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2.54	0.87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2.55	0.68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2.55	0.72			A
	30년 이상	20	2.70	0.86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만	80	2.18	0.57	10.00	*** 0.0001	C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2.38	0.64			B,C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2.76	0.74			A
	36학급 이상	314	2.69	0.86			B,A

***p<.001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은 학교운영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지역과 학교 규모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01) 평균값으로 볼 때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는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가, 성별로는 남교원보다는 여교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과 교육경력에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21-1> 학교운영비 예·결산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20	0.93	-1.04	0.3006	
	농 촌	98	3.32	0.88			
성 별	남	62	3.06	1.02	-1.73	0.0841	
	여	208	3.29	0.88			
학 력	고 졸 이 하	107	3.37	0.92	4.82	** 0.0088	A
	전 문 대 졸	48	3.42	0.92			A
	대 졸 이 상	115	3.04	0.88			B
연 령	30세 미 만	12	2.75	0.87	1.60	0.1608	A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3.44	0.96			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3.25	0.84			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3.21	0.99			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2.93	1.00			A
	50세 이 상	2	3.50	0.71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54	3.35	0.78	1.35	0.2583	B,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6	2.67	1.21			B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5	3.60	0.55			B,A
	36학급 이 상	314	3.22	0.94			B,A

**p<.01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은 학교운영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촌이,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의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전문대졸, 고졸 이하, 대졸 이상의 순으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학교 규모에서는 12학급~24학급, 25학급~35학급, 12학급 미만, 36학급 이상의 순으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운영비의 예·결산에 대한 학부모·지역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에 관하여 나타난 결과를 평균값으로 비교해 보면 교원들은 학부모들의 인식도를 낮게 보고 있는데 반하여(M=2.58) 학부모들은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M=3.21)

8) 학교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인식

“학부모·지역위원의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2.79	0.86	0.43	0.6686	
	농 촌	188	2.75	0.89			
성 별	남	160	2.84	0.89	1.31	0.1907	
	여	294	2.73	0.86			
학 력	고 졸 이 하	3	2.33	1.15	1.04	0.3535	A
	전 문 대 졸	19	3.00	0.88			A
	대 졸 이 상	432	2.76	0.87			A
교 육 경 력	10년 미 만	146	2.73	0.90	0.95	0.4470	A
	10년 이 상 ~ 15년 미 만	77	2.69	0.86			A
	15년 이 상 ~ 20년 미 만	80	2.70	0.93			A
	20년 이 상 ~ 25년 미 만	84	2.92	0.84			A
	25년 이 상 ~ 30년 미 만	47	2.89	0.79			A
	30년 이 상	20	2.75	0.85			A
학 교 규 모	12학 급 미 만	80	2.74	0.91	0.92	0.4316	A
	12학 급 이 상 ~ 24학 급 이 하	26	3.04	0.92			A
	25학 급 이 상 ~ 35학 급 이 하	34	2.71	0.76			A
	36학 급 이 상	314	2.76	0.87			A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모든 배경변인에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학부모·운영위원의 인식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모·지역위원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지역별로는 도시가, 성별로는 남교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 교육경력, 학교 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22-1>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173	3.26	0.87	0.05	0.9632	
	농 촌	98	3.26	0.84			
성별	남	62	3.05	0.86	-2.21	*	0.0293
	여	208	3.32	0.85			
학력	고졸 이하	107	3.31	0.91	2.80	0.0624	B,A
	전문대졸	48	3.46	0.82			A
	대졸 이상	115	3.13	0.81			B
연령	30세 미만	12	2.92	1.00	2.91	*	A
	30세 이상 ~ 35세 미만	52	3.63	0.70			A
	35세 이상 ~ 40세 미만	123	3.21	0.79			A
	40세 이상 ~ 45세 미만	68	3.16	0.99			A
	45세 이상 ~ 50세 미만	14	3.07	0.83			A
	50세 이상	2	3.00	0.00			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54	3.35	0.78	0.77	0.5129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6	2.83	0.98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5	3.40	0.55			A
	36학급 이상	314	3.24	0.89			A

*p<.05

<표 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성별과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5)

학부모·지역위원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 고졸 이하, 대졸 이상의 순으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과 학교 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대체로 학부모들은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학부모·지역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교원들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학교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들간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9) 학교장과 교원의 초빙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인식

“학부모·지역위원은 학교장과 교원의 역할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학교장과 교원의 초빙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2.69	0.84	1.36	0.1758	
	농 촌	188	2.58	0.83			
성 별	남	160	2.72	0.88	1.42	0.1566	
	여	294	2.60	0.81			
학 력	고졸이하	3	2.33	1.15	1.50	0.2246	A
	전문대졸	19	2.95	0.71			A
	대졸이상	432	2.63	0.84			A
교 육 경 력	10년 미만	146	2.60	0.85	0.72	0.6055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2.62	0.87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2.58	0.87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2.73	0.73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2.66	0.84			A
	30년 이상	20	2.90	0.91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만	80	2.48	0.75	2.12	0.0968	B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2.73	0.72			B,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2.88	0.69			A
	36학급 이상	314	2.65	0.88			B,A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은 학교장과 교원의 초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모든 배경변인에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M=2.90 이하)

학부모·지역위원은 학교장과 교원의 초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도는 지역별로는 도시가, 성별로는 남교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과 교육경력에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23-1> 학교장과 교원의 초빙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18	0.90	-0.53	0.5940	
	농 촌	98	3.24	0.87			
성 별	남	62	3.11	0.98	-0.95	0.3410	
	여	208	3.24	0.86			
학 력	고 졸 이 하	107	3.36	0.94	6.70	** 0.0014	A
	전 문 대 졸	48	3.40	0.84			A
	대 졸 이 상	115	2.98	0.82			B
연 령	30세 미 만	12	2.75	0.87	1.62	0.1536	A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3.44	0.89			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3.17	0.88			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3.21	0.84			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3.00	1.04			A
	50세 이 상	2	3.50	0.71			A
학 교 규 모	12학 급 미 만	54	3.30	0.79	0.90	0.4412	A
	12학 급 이 상 ~ 24학 급 이 하	6	2.83	1.17			A
	25학 급 이 상 ~ 35학 급 이 하	5	3.60	0.55			A
	36학 급 이 상	314	3.19	0.91			A

**p<.01

<표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은 학교장과 교원의 초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1) 다른 배경변인에서는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지역위원의 교원은 초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도는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이, 성별로는 여자의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과 고졸 이하, 대졸 이상의 순으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과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대체로 학교장과 교사의 초빙에 관한 학부모·지역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에 대하여 교원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하여 학부모는 다소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도 학부모와 교원들간에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인식

“학부모·지역위원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266	2.70	0.82	1.34	0.1821	
	농 촌	188	2.59	0.84			
성별	남	160	2.69	0.85	0.68	0.4997	
	여	294	2.63	0.81			
학력	고졸 이하	3	2.33	1.15	0.74	0.4787	A
	전문대졸	19	2.84	0.69			A
	대졸 이상	432	2.65	0.83			A
교육 경력	10년 미만	146	2.71	0.83	0.43	0.8255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2.55	0.82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2.65	0.90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2.67	0.75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2.64	0.87			A
	30년 이상	20	2.60	0.75			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80	2.43	0.74	2.99	0.0308	B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2.88	0.65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2.74	0.67			B,A
	36학급 이상	314	2.68	0.86			B,A

*p<.05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학교 규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5), 다른 배경변인에서는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지역적으로는 도시가, 성별로는 남교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과 교육경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24-1>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지식·식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30	0.85	1.32	0.1868	
	농 촌	98	3.15	0.93			
성 별	남	62	2.90	0.84	-3.64	** 0.0004	
	여	208	3.35	0.87			
학 력	고 졸 이 하	107	3.28	0.93	0.82	0.4415	A
	전 문 대 졸	48	3.35	0.86			A
	대 졸 이 상	115	3.17	0.85			A
연 령	30세 미 만	12	2.92	0.79	5.01	** 0.0002	A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3.75	0.86			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3.18	0.86			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3.13	0.86			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2.86	0.66			A
	50세 이 상	2	3.00	1.41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54	3.19	0.85	0.77	0.5139	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6	2.83	0.98			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5	3.00	0.71			A
	36학급 이 상	314	3.28	0.90			A

**p<.01

<표 2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하는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성별과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1) 다른 배경변인에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지역위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가, 성별로는 여자들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과 연령, 학교 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대체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학부모·지역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에 대하여 교원들은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학부모들은 평균적인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대한 견해차가 교원과 학부모·지역위원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보다 도시지역의 인식도가 높은 것은 농촌보다 인적·물적 자원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3. 學校運營委員會의 活性化 方案에 對한 認識

1) 각종 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인식

“학교와 학운위의 의견 마찰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266	3.31	1.04	-1.37	0.1727	
	농 촌	188	3.44	0.93			
성별	남	160	3.51	1.00	2.22	*	
	여	294	3.29	0.99			
학력	고졸 이하	3	2.00	1.00	2.99	0.0513	B
	전문대졸	19	3.26	0.87			A
	대졸 이상	432	3.38	1.00			A
교육 경력	10년 미만	146	3.49	0.92	1.47	0.1905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3.30	1.16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3.34	0.94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3.43	0.95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3.06	1.05			A
	30년 이상	20	3.30	1.08			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80	3.56	0.88	1.66	0.1753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3.46	0.99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3.44	1.08			A
	36학급 이상	314	3.30	1.01			A

*p<.05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 마찰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지역별로는 농촌이, 성별로는 남자가,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경력과 학교 규모에서 평균값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5-1> 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75	1.10	0.97	0.3322	
	농 촌	98	3.61	1.19			
성 별	남	62	3.60	1.23	-0.82	0.4157	
	여	208	3.73	1.11			
학 력	고 졸 이 하	107	3.68	1.16	0.11	0.8929	A
	전 문 대 졸	48	3.77	1.04			A
	대 졸 이 상	115	3.69	1.16			A
연 령	30세 미 만	12	3.33	1.44	1.71	0.1333	A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4.06	0.92			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3.68	1.09			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3.51	1.28			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3.71	1.14			A
	50세 이 상	2	4.00	0.00			A
학 교 규 모	12학 급 미 만	54	3.65	1.12	1.05	0.3700	A
	12학 급 이 상 ~ 24학 급 이 하	6	4.50	0.55			A
	25학 급 이 상 ~ 35학 급 이 하	5	3.80	0.84			A
	36학 급 이 상	314	3.69	1.15			A

<표 2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 마찰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경변인별 평균값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인식의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과 연령, 학교 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학교와 운영위원회의 조정위원회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에서 교원보다 학부모의 인식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아직도 학교와 학부모간에 충분한 신뢰가 쌓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2)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인식

“학운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266	3.27	1.01	-1.97	*	
	농 촌	188	3.46	0.93		0.05	
성별	남	160	3.48	0.99	2.10	*	
	여	294	3.28	0.97		0.0369	
학력	고졸 이하	3	2.33	1.15	2.60	0.0755	B
	전문대졸	19	3.05	0.78			B
	대졸 이상	432	3.37	0.98			A
교육 경력	10년 미만	146	3.40	0.93	0.72	0.6114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3.30	1.09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3.35	0.93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3.44	1.00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3.21	1.02			A
	30년 이상	20	3.10	0.97			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80	3.55	0.95	3.81	0.0103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3.65	0.85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3.59	0.86			A
	36학급 이상	314	3.25	1.00			A

*p<.05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지역별, 성별, 학교 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촌이, 성별로는 여교원이,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경력과 학교 규모에서는 평균값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26-1> 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76	0.94	0.69	0.4904	
	농 촌	98	3.67	1.16			
성 별	남	62	3.47	1.14	-2.12	*	0.0364
	여	208	3.81	0.98			
학 력	고 졸 이 하	107	3.73	1.11	0.34	0.7100	A
	전 문 대 졸	48	3.83	1.04			A
	대 졸 이 상	115	3.69	0.94			A
연 령	30세 미 만	12	3.17	1.19	0.87	0.4998	A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3.83	0.86			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3.75	1.03			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3.74	1.09			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3.64	1.08			A
	50세 이 상	2	4.00	1.41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54	3.65	1.12	0.45	0.7163	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6	4.00	0.89			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5	3.40	1.14			A
	36학급 이 상	314	3.75	1.01			A

*p<.05

<표 2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가, 성별로는 여교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으며, 학력과 연령, 학교 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평균값으로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 배경변인에 상관없이 소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

“학교장은 의사 결정시 상반된 의견에 대한 조정능력을 발휘하여야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학교장의 조정능력 필요성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3.75	0.91	-2.80	** 0.0097	
	농 촌	188	3.98	0.96			
성 별	남	160	4.01	0.92	2.80	** 0.0054	
	여	294	3.76	0.93			
학 력	고졸 이하	3	3.67	0.58	0.59	0.5534	A
	전문대졸	19	3.63	0.83			A
	대졸 이상	432	3.86	0.94			A
교 육 경 력	10년 미만	146	3.82	0.89	1.68	0.1373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3.60	1.01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3.79	1.00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4.05	0.89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3.98	0.94			A
	30년 이상	20	3.90	0.79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만	80	4.30	0.89	12.67	*** 0.0001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4.35	0.75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3.88	0.84			B
	36학급 이상	314	3.69	0.92			B

p<.01, *p<.001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장은 의사 결정시 상반된 의견에 대한 조정능력을 발휘하여야 바람직한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학교 규모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001), 지역과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학교장의 조정능력 발휘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촌이, 여교원보다는 남교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과 교육경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1> 학교장의 조정능력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86	0.79	-0.43	0.6712	
	농 촌	98	3.91	1.00			
성 별	남	62	3.87	0.98	-0.03	0.9745	
	여	208	3.88	0.84			
학 력	고 졸 이 하	107	3.95	0.94	2.94	0.0545	B,A
	전 문 대 졸	48	4.04	0.71			A
	대 졸 이 상	115	3.73	0.85			B
연 령	30세 미 만	12	3.42	1.16	1.64	0.1501	A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3.69	0.67			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3.93	0.84			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4.00	0.95			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4.00	1.04			A
	50세 이 상	2	3.50	0.71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54	3.96	0.95	0.92	0.4303	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6	4.33	0.82			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5	4.00	0.71			A
	36학급 이 상	314	3.83	0.85			A

<표 2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장은 의사 결정시 상반된 의견에 대한 조정능력을 발휘하여야 바람직한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모든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장의 의견 조정능력 발휘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이, 성별로는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에서는 전문대졸, 고졸 이하, 대졸 이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과 학교 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학교장의 조정능력의 발휘에 대한 인식도에서 교원과 학부모 모두 평균값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상황판단과 조정능력의 발휘가 매우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4)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의 연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 학부모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266	3.59	0.90	-0.69	0.4893	
	농 촌	188	3.65	0.78			
성 별	남	160	3.74	0.78	2.44	*	
	여	294	3.55	0.88			
학 력	고 졸 이 하	3	3.33	0.58	0.22	0.7188	A
	전 문 대 졸	19	3.68	0.75			A
	대 졸 이 상	432	3.62	0.86			A
교 육 경 력	10년 미 만	146	3.66	0.90	0.58	0.7177	A
	10년 이 상 ~ 15년 미 만	77	3.61	0.85			A
	15년 이 상 ~ 20년 미 만	80	3.48	0.90			A
	20년 이 상 ~ 25년 미 만	84	3.65	0.80			A
	25년 이 상 ~ 30년 미 만	47	3.64	0.67			A
	30년 이 상	20	3.65	0.99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80	3.78	0.71	4.03	**	B,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26	3.77	0.65			B,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34	3.94	0.74			A
	36학급 이 상	314	3.53	0.90			B

*p<.05, **p<.01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의 연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학교 규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p<.01),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5)

학부모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교원의 인식도는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촌이, 여교원보다는 남교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과 교육경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28-1> 학부모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73	0.93	-0.26	0.7963	
	농 촌	98	3.77	0.99			
성 별	남	62	3.47	1.10	-2.35	*	0.0208
	여	208	3.83	0.89			
학 력	고졸이하	107	3.77	1.05	0.30	0.7422	A
	전문대졸	48	3.81	0.87			A
	대졸이상	115	3.70	0.90			A
연 령	30세 미만	12	3.08	0.90	1.81	0.1105	A
	30세 이상 ~ 35세 미만	52	3.77	0.92			A
	35세 이상 ~ 40세 미만	123	3.86	0.89			A
	40세 이상 ~ 45세 미만	68	3.69	1.12			A
	45세 이상 ~ 50세 미만	14	3.50	0.52			A
	50세 이상	2	3.50	0.71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만	54	3.72	1.05	0.70	0.5513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6	4.00	1.10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5	3.20	1.30			A
	36학급 이상	314	3.76	0.92			A

*p<.05

<표 2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의 연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5).

학부모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도는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촌이, 남교원보다는 여교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 연령, 학교 규모별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학부모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제 규정에 대한 연수가 상당히 필요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교원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5) 학부모 · 지역위원의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학부모 · 지역위원들을 위한 교육과정, 학교운영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관한 연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학부모 · 지역위원의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266	3.74	0.92	0.38	0.7061	
	농 촌	188	3.71	0.81			
성별	남	160	3.83	0.83	1.68	0.0934	
	여	294	3.68	0.90			
학력	고졸이하	3	4.00	0.00	0.75	0.4723	A
	전문대졸	19	3.95	0.91			A
	대졸이상	432	3.72	0.88			A
교육 경력	10년 미만	146	3.77	0.93	0.43	0.8245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3.69	0.91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3.69	0.96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3.74	0.79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3.66	0.75			A
	30년 이상	20	3.95	0.83			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80	3.79	0.67	0.34	0.7990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3.85	0.61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3.74	1.02			A
	36학급 이상	314	3.71	0.93			A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 · 지역위원들을 위한 교육과정, 학교운영비, 학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관한 연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모든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가, 여교원보다는 남교원이, 학력이 낮을수록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경력과 학교규모에서는 평균값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29-1> 학부모·지역위원의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69	0.87	-0.63	0.5317	
	농 촌	98	3.77	0.97			
성 별	남	62	3.63	1.04	-0.89	0.3763	
	여	208	3.75	0.86			
학 력	고졸 이하	107	3.77	0.98	0.41	0.6644	A
	전문대졸	48	3.75	0.96			A
	대졸 이상	115	3.66	0.82			A
연 령	30세 미만	12	2.83	0.94	3.46	** 0.0048	B
	30세 이상 ~ 35세 미만	52	3.58	0.75			B,A
	35세 이상 ~ 40세 미만	123	3.83	0.88			A
	40세 이상 ~ 45세 미만	68	3.82	1.01			A
	45세 이상 ~ 50세 미만	14	3.50	0.76			B,A
	50세 이상	2	4.00	0.00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만	54	3.70	1.00	0.60	0.6187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6	3.83	1.33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5	3.20	0.84			A
	36학급 이상	314	3.73	0.87			A

**p<.01

<표 2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지역위원들을 위한 교육과정, 학교운영비, 학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관한 연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1)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촌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학력이 낮을수록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 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학부모·지역위원들을 위한 교육과정, 학교운영비, 학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관한 연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도는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값으로 볼 때 교원과 학부모에 관계없이 학부모·지역위원들을 위한 교육과정, 학교운영비, 학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관한 연수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6) 학교내 다른 조직의 운영에 관한 심의에 대한 인식

“학교내 다른 조직의 운영에 관한 심의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표 30> 다른 조직의 운영에 관한 심의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3.38	0.98	0.74	0.4582	
	농 촌	188	3.31	0.94			
성 별	남	160	3.67	1.01	0.34	0.7345	
	여	294	3.34	0.93			
학 력	고 졸 이 하	3	3.33	0.58	0.08	0.9252	A
	전 문 대 졸	19	3.26	0.99			A
	대 졸 이 상	432	3.35	0.96			A
교 육 경 력	10년 미 만	146	3.40	0.99	1.59	0.1625	A
	10년 이 상 ~ 15년 미 만	77	3.21	1.06			A
	15년 이 상 ~ 20년 미 만	80	3.18	0.92			A
	20년 이 상 ~ 25년 미 만	84	3.38	0.90			A
	25년 이 상 ~ 30년 미 만	47	3.55	0.85			A
	30년 이 상	20	3.55	0.89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80	3.39	0.82	0.96	0.4096	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26	3.23	0.91			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34	3.59	1.02			A
	36학급 이 상	314	3.32	0.99			A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내 다른 조직의 운영에 관한 심의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가, 여교원보다는 남교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과 교육경력, 학교 규모에서는 평균값으로 볼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평균값으로 볼 때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교원과 학부모 모두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0-1> 다른 조직의 운영에 관한 심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3.44	0.91	-0.49	0.6238	
	농 촌	98	3.50	1.09			
성 별	남	62	3.34	1.04	-1.11	0.2694	
	여	208	3.50	0.96			
학 력	고 졸 이 하	107	3.56	1.03	4.14	*	B,A
	전 문 대 졸	48	3.69	0.93			A
	대 졸 이 상	115	3.27	0.92			B
연 령	30세 미 만	12	2.92	1.16	1.43	0.2134	B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3.29	0.96			B,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3.54	0.92			B,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3.51	1.03			B,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3.50	1.02			B,A
	50세 이 상	2	4.00	1.41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54	3.52	1.00	0.80	0.4960	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6	4.00	1.26			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5	3.60	0.89			A
	36학급 이 상	314	3.42	0.97			A

*p<.05

<표 3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내 다른 조직의 운영에 관한 심의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학력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p<.01$), 대부분의 배경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촌이, 남자보다는 여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 고졸 이하, 대졸 이상의 순으로, 연령에서는 50세 이상, 35세~40세, 40세~45세, 45세~50세, 30세~35세, 30세 미만의 순으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학교내 다른 조직의 운영에 관한 심의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평균값으로 볼 때 교사와 학부모 모두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7) 심의 사항 사전 예고제에 대한 인식

“회의 개최 전 심의 사항 사전 예고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 심의 사항 사전 예고제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266	4.01	0.86	-0.12	0.9036	
	농 촌	188	4.02	0.88			
성별	남	160	4.12	0.86	1.88	0.0603	
	여	294	3.96	0.86			
학력	고졸이하	3	3.67	0.58	0.44	0.6411	A
	전문대졸	19	3.89	0.74			A
	대졸이상	432	4.02	0.87			A
교육 경력	10년 미만	146	4.01	0.92	0.30	0.9136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3.95	0.97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3.99	0.83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4.05	0.82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4.13	0.65			A
	30년 이상	20	4.05	0.83			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80	4.26	0.79	3.48	0.0159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4.15	0.61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4.09	0.79			A
	36학급 이상	314	3.93	0.90			A

*p<.05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의 개최 전 심의 사항 사전 예고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학교 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지역별로는 농촌이, 성별로는 남교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 교육경력, 학교 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평균값으로 볼 때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대단히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1> 심의 사항 사전 예고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173	4.17	0.79	-1.10	0.2721	
	농 촌	98	4.28	0.74			
성 별	남	62	4.13	0.82	-0.90	0.3665	
	여	208	4.23	0.76			
학 력	고 졸 이 하	107	4.35	0.73	3.96	* 0.0202	A
	전 문 대 졸	48	3.98	0.91			B
	대 졸 이 상	115	4.17	0.74			B,A
연 령	30세 미 만	12	3.17	1.11	5.51	*** 0.0001	B
	30세 이 상 ~ 35세 미 만	52	4.38	0.63			A
	35세 이 상 ~ 40세 미 만	123	4.20	0.79			A
	40세 이 상 ~ 45세 미 만	68	4.29	0.69			A
	45세 이 상 ~ 50세 미 만	14	4.14	0.66			A
	50세 이 상	2	4.00	0.00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 만	54	4.30	0.74	0.51	0.6749	A
	12학급 이 상 ~ 24학급 이 하	6	4.00	1.26			A
	25학급 이 상 ~ 35학급 이 하	5	4.00	0.71			A
	36학급 이 상	314	4.20	0.77			A

*p<.05, **p<.01, ***p<.001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의 개최 전 심의 사항 사전 예고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연령에서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01)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촌이,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전문대졸의 순으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원과 학부모 모두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평균값이 4.00 이상인 것으로 볼 때, 심의 안전의 사전 통보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심의 안전 사전 통보의 필요성에 인식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 대부분의 학교가 심의 안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여 학교 당국의 의사에 따라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8) 학교운영위원회의 방청에 대한 인식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회의 방청은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회의 방청에 대한 교원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 역	도 시	266	3.89	0.97	-2.65	**	
	농 촌	188	4.14	0.96		0.0083	
성 별	남	160	4.28	0.88	4.90	***	
	여	294	3.84	0.99		0.0001	
학 력	고졸이하	3	3.67	0.58	0.43	0.6538	A
	전문대졸	19	3.84	0.90			A
	대졸이상	432	4.00	0.98			A
교 육 경 력	10년 미만	146	3.98	0.96	1.24	0.2883	A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	3.83	1.11			A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	3.91	1.02			A
	20년 이상 ~ 25년 미만	84	4.15	0.92			A
	25년 이상 ~ 30년 미만	47	4.11	0.80			A
	30년 이상	20	4.15	0.88			A
학 교 규 모	12학급 미만	80	4.46	0.87	10.03	*** 0.0001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26	4.38	0.80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34	3.88	0.95			B
	36학급 이상	314	3.86	0.97			B

p<.01, *p<.001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회의 방청은 필요한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는 성별, 학교 규모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지역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회의를 방청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도는 평균값으로 볼 때 모든 배경요인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1> 회의 방청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구 분		N	M	SD	t(F)	p	DUNCAN'S MRT
지역	도 시	173	4.20	0.81	-0.73	0.4651	
	농 촌	98	4.28	0.86			
성별	남	62	4.16	0.96	-0.72	0.4730	
	여	208	4.25	0.79			
학력	고졸 이하	107	4.35	0.78	2.11	0.1230	A
	전문대졸	48	4.08	0.92			A
	대졸 이상	115	4.18	0.82			A
연령	30세 미만	12	3.17	1.19	4.92	** 0.0003	B
	30세 이상 ~ 35세 미만	52	4.42	0.64			A
	35세 이상 ~ 40세 미만	123	4.26	0.76			A
	40세 이상 ~ 45세 미만	68	4.21	0.87			A
	45세 이상 ~ 50세 미만	14	4.21	0.89			A
	50세 이상	2	4.50	0.71			A
학교 규모	12학급 미만	54	4.44	0.77	1.64	0.1812	A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6	4.33	1.03			A
	25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5	4.20	0.45			A
	36학급 이상	314	4.17	0.84			A

**p<.01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회의 방청은 필요한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촌이, 성별로는 여자의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연령, 학교 규모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평균값으로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방청에 대한 인식도는 모든 배경변인에서 교원과 학부모 모두의 인식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공개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의 홍보가 미흡하여 일반 학부모와 교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초등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경기도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분석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要約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질문에서 심의 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교원의 경우 지역, 성별, 교육경력, 학교 규모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부모의 경우 평균값으로는 농촌, 남자,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 규모가 클수록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하여 교원과 학부모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에 대하여 교원의 인식도는 도시보다는 농촌이, 여교원 보다 남교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경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교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반면(M=2.96) 학부모들의 인식도는 높게 나타났다(M=3.59).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의 심의와 학교운영비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해서 교원과 학부모 모두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으로 볼 때 인식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교원 M=3.79, 학부모 M=3.98)

교원과 학부모 모두가 학교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경영자의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된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역할 수행에 대한 질문에서 운영위원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도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 지역, 학교 규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지역위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에 대하여 교원의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볼 때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M=2.68$ 이하) 학부모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M=3.0$ 이상)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의 차가 큼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학부모·지역위원의 학칙 등 제 규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에 대한 인식도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으로 볼 때 교원들의 인식도는 낮게 나타난 반면 학부모의 경우에는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학부모·운영위원의 학교운영비의 예·결산과 의 전문적 지식과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식견에 대한 인식도는 평균값으로 볼 때 교원들은 학부모들의 인식도를 낮게 보고 있는데 반하여($M=2.58$) 학부모들은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M=3.21$)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도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학교장 및 교원초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에 대한 인식도는 교원의 경우는 모든 배경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으로 볼 때 낮게 인식되고 있으며($M=2.90$ 이하) 학부모의 경우는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배경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장 및 교원초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에 대한 학부모·지역위원의 인식도에 대하여 교원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들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인식도는 교원의 경우 농촌, 남교원, 고학력일수록,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인식도는 배경변인에 상관없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으로 볼 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M=3.50$ 이상). 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인식도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에서 평균값으로 볼 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홉째, 학부모·지역위원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교원의 경우 학교 규모와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부모의 경우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방청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인식도는 교원의 경우 성별, 학교 규모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경우에는 농촌, 여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원과 학부모 모두 평균값으로 볼 때 인식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結 論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운영위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의 차이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교원과 학부모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운영위원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원과 학부모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의 경비부담 사항, 학교운영비, 학교발전기금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과 학부모들간에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영위원의 역할 수행에 대한 동료 집단의 인식도에 있어서 평균값을 볼 때 교원과 학부모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운영위원들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도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에 관한 학부모·지역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에 대하여 교원들은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M=3$ 이하) 학부모

들은 평균값(M=3)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견해차가 크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의 차이는 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학교장의 역할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견해가 교원과 학부모 모두에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 학교 구성원간의 협조 체제 마련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연수와 심의 사항의 사전 통보 및 회의의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과 경리부문에는 교원과 학부모의 견해차가 확연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장의 조정자적 역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사항과 심의 내용에 대한 홍보 및 연수 기회를 마련하면 학교 운영위원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활성화 될 것이다.

3. 提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교 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에 따라 학교운영 참여의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구성원들간의 권한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둘째, 학교경영에 지역인사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들 인사의 적극적 동참을 위한 교육 행정상의 지원과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VI. 參 考 文 獻

1. 國內 文獻

- 강무섭 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5
- 강사민,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 교육부 : 해외교육정보, 1996. 3. 1.
- 강인수 외, 교육법론, 서울 : 도서출판 하우, 1995
- 공병호, 일본의 PTA활동과 지역의 교육력, 새교육, 97년 2월호
-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자치제 발전방안, 서울 : 교육개혁심의회, 1986
-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교육개혁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4.
- 교육법전편찬회, 교육법전, 서울 : 동진인쇄, 2001.
- 권세익,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문하,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교원·학부모의 인식 차이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보현,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법문사, 1982
- 김봉수, 학교와 학급경영, 서울 : 형설출판사, 1987
- 김신복,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서울 : 한국교육학회, 1995. 12
- 김영도, 학교경영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문음사, 1991
- 김영식·최희선, 교육제도 발전론, 서울 : 성원사, 1988
- 김영철, “학교에서의 의사결정, 교육행정연구 제7권 제1호, 1989
- 김종철, 한국고등교육연구, 서울 : 배영사, 1979

- 김종철 · 김신복 · 이종재,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교육 행 · 재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부 학술연구조성지에 의한 보고서, 1985. 12.
- 김종철외, 학교 · 학급경영론,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1
- 김종철 · 이종재,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1994
- 김창걸, 교육행정학 신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8
- 김태완외, “교육자치제 종합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0
- 남정걸, 교육행정과 학교행정, 서울 : 세영사, 1996
- _____,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 서울과학사, 1991
- 노재원,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 · 학부모의 요구 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노종희, 교육개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인천 : 한국교육행정학회, 1996
-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 ·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1995.
- 박용헌, 학교 사회, 서울 : 배영사, 1998
- 서정화 · 박설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중심 책임경영제 활성화 방안”, 홍익대 논문집, 제13집, 1996.
- 손재식, 현대 지방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83
- 송인주,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현황, 교육부 해외정보, 1996. 2. 1.
- 염철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인식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윤정일외, 한국의 교육정책, 서울 : 교육과학사, 1991

- 임병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초등학교 교원들의 의식조사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임연기, “학교운영 개혁의 과제”, 인천 : 한국교육행정학회소식지 8호, 1996
- 정일섭,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전망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의식조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정태범·김세기·서정화, 학교경영 핸드북,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1
- 정태범외, 학교·학급경영론, 서울 : 도서출판 하우, 1996
- 조성일,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서울 : 재동문화사, 1995
- 조성일·안세근, 지방자치 제도론, 서울 : 배영사, 1996
- _____, 지방교육 자치제도론, 서울 : 양서원, 1996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 1995.

2. 外國 文獻

- E.Weick.Karl, "Educational Organitions as Loosely Coupled Syste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1 (March 1976)
- J.A.Conway, "The Myth, Mistery and Mastery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1984.
- V.Crockenberg, & W. W. Jr Clark, "Teacher Participation in School
Decision Making", Phi Delta Kappan, 1979.
- W.K.Hoey, & C.G. Miskel,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3rd ed), New York, 1987.

▶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문지(교원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다.

본 설문지는 1996년부터 초·중등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학교 공동체 여러분의 생각을 파악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응답하신 생각이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문항에 진실한 답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3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학과

교육행정전공 김연규 올림

* 다음은 자료 처리에 필요한 기본 사항입니다. 선생님과 관련 있으신 사항에 V표를 해 주십시오.

1. 지 역 : 1) 도시 지역 () 2) 농촌 지역 ()
2. 성 별 : 1) 남 () 2) 여 ()
3. 운영위원 여부 : 1) 운영위원임 () 2) 운영위원이 아님 ()
4. 학 력 : 1) 고졸 () 2) 전문대졸 () 3) 대졸이상 ()
5. 교육경력 : 1) 10년 미만 () 2) 10년 이상 ~ 15년 미만 ()
3) 15년 이상 ~ 20년 미만 () 4) 20년 이상 ~ 25년 미만 ()
5) 25년 이상 ~ 30년 미만 () 6) 30년 이상 ()
6. 학교규모 : 1) 12학급 미만 ()
2)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
3) 24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
4) 36학급 이상 ()

▣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 ☞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 ☞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 ☞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 ☞ 기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학교헌장,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
 -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수학여행, 학생야외수련, 교복 및 체육복 선정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비 등 학교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장·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
 -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에 관련된 건의 사항
 - 자발적 기부금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 위원들의 제안사항 및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

※ 심의란? : 상세하게 조사·검토하여 그 가부를 의논하여 결정하고 집행은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을 말함.

♣ 위 내용을 참조하신 후, 다음의 각 문항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견해와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보기)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V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질문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알고 있다.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3. 교과용도서와 부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4.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5. 학교헌장, 학칙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6.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체육복 및 교복 선정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7. 학교운영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8.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결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9. 학교장과 교사의 초빙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10. 학부모 및 일반인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11. 학교내 다른 조직(청소년 단체 육성단체, 학부모회,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의 역할에 관한 질문					
12. 우리 학교의 교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3.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14.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15.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16.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학교헌장, 학칙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17.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수학여행, 학생야외수련 등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18.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학교운영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19.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20.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학교장, 교사의 역할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21.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					
22.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당국의 운영방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 마찰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장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상황판단과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조정능력을 발휘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해설 등에 관한 연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학교운영비의 예·결산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을 길러주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					
27.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내 다른 조직(청소년단체 육성단체, 학부모회,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28.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은 회의 개최일 전에 심의할 사항에 관해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가져야 한다.					
29.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어야 한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문지(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다.

본 설문지는 1996년부터 초·중등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학교 공동체 여러분의 생각을 파악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응답하신 생각이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문항에 진실한 답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3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학과

교육행정전공 김연규 올림

* 다음은 자료 처리에 필요한 기본 사항입니다. 선생님과 관련 있으신 사항에 V표를 해 주십시오.

1. 지 역 : 1) 도시 지역 () 2) 농촌 지역 ()
2. 성 별 : 1) 남 () 2) 여 ()
3. 운영위원 여부 : 1) 운영위원임() 2) 운영위원이 아님()
4. 학 력 : 1) 고 졸 () 2) 대졸이상 () 3) 기 타()
5. 연 령 : 1) 30세 미만() 2) 30세 이상 ~ 35세 미만()
 3) 35세 이상 ~ 40세 미만() 4) 40세 이상 ~ 45세 미만()
 5) 45세 이상 ~ 50세 미만() 6) 50세 이상()
6. 학교규모 : 1) 12학급 미만 ()
 2) 12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
 3) 24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
 4) 36학급 이상 ()

▣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 ☞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 ☞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 ☞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 ☞ 기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학교헌장,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
 -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수학여행, 학생야외수련, 교복 및 체육복 선정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비 등 학교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장·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
 -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에 관련된 건의 사항
 - 자발적 기부금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 및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

※ 심의란? : 상세하게 조사·검토하여 그 가부를 의논하여 결정하고 집행은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을 말함.

♣ 위 내용을 참조하신 후, 다음의 각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의 견해와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보기)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V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질문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알고 있다.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3. 교과용도서와 부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4.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5. 학교헌장, 학칙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6.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체육복 및 교복 선정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7. 학교운영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8.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결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9. 학교장과 교사의 초빙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10. 학부모 및 일반인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11. 학교내 다른 조직(청소년 단체 육성단체, 학부모회,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의 역할에 관한 질문					
12. 우리 학교의 교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3.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14.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15.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16.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학교헌장, 학칙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17.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수학여행, 학생야외수련 등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18.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학교운영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19.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20.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학교장, 교사의 역할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21.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					
22.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당국의 운영방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 마찰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장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상황판단과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조정능력을 발휘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해설 등에 관한 연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학교운영비의 예·결산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을 길러주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					
27.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내 다른 조직(청소년단체 육성단체, 학부모회,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28.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은 회의 개최일 전에 심의할 사항에 관해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가져야 한다.					
29.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어야 한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eachers and Schoolchildren's Parents on the Oper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teering Committee

Kim, Yeon-kyu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materials available for the activ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teering committee in a desirable direction by identifying the perception of teachers and schoolchildren's parents on the oper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teering committee and the realities of its oper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and the questionnaire research.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a total of 724 teachers in public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both the rural area and the urban area in Kyonggi Province and parents(454 teachers and 270 parents). The questionnaire was made up of 29 items pertaining to the deliberative matters of the elementary school steering committee, its role, and its activation plan. They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Data from the questionnaire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eachers and schoolchildren's parents on the deliberative matters of the elementary school steering committee. As result, it was found that teachers were well-informed of the deliberative matters of the elementary school steering committee. But schoolchildren's parents were ill-informed of it. Both teachers and parents were positively conscious of the matters deliberated on by the elementary school steering committee. But it was found that both groups had the conflicting view on such matters as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expenses borne by schoolchildren's parents, school operating expenses, school development funds and the like.

Second,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average level of perception by peer group on the performance of the role of the elementary school steering committee. Both groups made a positive assessment of it. They generally made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performance of steering committeemen's role. Teachers made a low perception of parents' and local members' knowledge and opinion on the major deliberative matters of the elementary school steering committee, teachers(M =less than 3), whereas parents made the high perception of it, more than the mean($M=3$), which indicates that there was a great difference in opinion on it.

Third,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n the activation plan of the elementary school steering committee. Both groups showed the high perception of the necessit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and the subcommittee and the role of the schoolmaster to activate the elementary school steering committee. Accordingly,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to provide for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school members, And it was found that both groups perceived the necessity for the prior notice of the in-service training and deliberative matters of the elementary school steering committee and the need for the opening of the meeting.

As a result of synthesizing the facts analyzed through this study, both the perception of teachers and parents on the operating realities of the elementary school steering committee. can be positively evaluated, but both groups showed the clear difference in opinion on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and the accounting pa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be the desirable plan for its resolution and presuppose the coordinative role of the schoolmaster. And if opportunities for publicity and in-service training are provided concerning the major matters and deliberative content of the elementary school steering committee, it will be operated and activated in a desirable direction.